

제2023-11호 2023년 2월 7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3-53호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1
○ 여수시 고시	제2023-5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여수상공회의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10
○ 여수시 고시	제2023-56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12
○ 여수시 고시	제2023-57호	도로구간(중속구간) 설정 고시	16
○ 여수시 고시	제2023-58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대포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
○ 여수시 고시	제2023-59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23
○ 여수시 고시	제2023-6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26
○ 여수시 고시	제2023-62호	지방하천 점용허가(변경) 고시	27
○ 여수시 고시	제2023-63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여수시 공설묘지 조성공사)	29
○ 여수시 고시	제2023-64호	2023년도 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위탁 고시	30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3-384호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32
○ 여수시 공고	제2023-395호	여수시 문화재 안전경비원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37
○ 여수시 공고	제2023-413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61
○ 여수시 공고	제2023-419호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63
○ 여수시 공고	제2023-422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65
○ 여수시 공고	제2023-423호	여수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71
○ 여수시 공고	제2023-432호	2023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공고	77
○ 여수시 공고	제2023-437호	2023년 여수시 해수욕장 관리계획 의견청취 공고	188
○ 여수시 공고	제2023-438호	여수시 금천항 어촌뉴딜300사업 사무장 채용 공고	211
○ 여수시 공고	제2023-439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221

회								
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보조사업 신청 모집 공고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시민과 관광객이 음식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업소 외부에 게시(부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율경쟁 유도,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의 불만 민원을 해소하고자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보조사업」에 참여할 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여 수 시 장

1. 모집기간 : 2023. 2. 6. ~ 2. 20.(14일간)
2.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주 또는 관련 단체
3. 사업기간 : 2023. 3. 1. ~ 10. 31.
4. 보조사업 내용
 - 총사업비 : 20,000천원(100,000원×200개소)
 - 지원액 : 100,000원/1개소(시비)
 - 사업량 : 일반음식점 200개소(단,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곳)
 - 사업내용
 - 영업장 면적 150㎡ 미만 일반음식점에 옥외가격 표시
 - 영업소 입구, 주출입문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옥외 가격 표시
5. 제출서류
 - 여수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신청서(붙임 1)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별지1호 서식)
6. 제출처 : 여수시청 식품위생과(위생지도팀)

7. 제출방법 : 방문, 우편(여수시 시청서4길 47, 식품위생과)
8. 사업자 선정 :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개별통지
9. 보조금사업 조건

○ 개별·단체사업자 공통

- 보조사업자는 옥외가격 표시 사진, 세금계산서 등의 결과물을 영업장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한 비용은 음식점 영업주 본인이 부담한다.
- 옥외가격표시는 내구성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반드시 전품목 또는 5종 이상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은 영업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옥외가격표시 보조사업 대상자로부터 위생사업 지원 신청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보조사업 대상자는 ‘여수 맛’ 앱에 가입하여야 한다.

○ 단체의 경우

- 옥외가격 표시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200개소-개별사업자 신청건) 음식점에 옥외가격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 등 부대경비는 개소 당 3,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옥외가격 표시는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 관광지 주변, 장기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 위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 옥외가격 표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보고 또는 점검 받아야하여야 한다.

10.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은 여수시 기본계획에 따라 수정·추가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659-4229)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여수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보조사업						
사업기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장 면적 150㎡ 미만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 ○ 영업소 입구, 주출입문 등 손님에 쉽게 볼수 있는 곳에 옥외가격 표시 ○ 옥외가격 표시 음식점에 최대 100,000원까지 지급 						
통 계 목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지원근거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사 업 비	천원		당해사업 총사업비		시비	천원(%)	
					자부담	천원(%)	
단 체 연락처	주소						
	전화				휴대폰		
	FAX				E-mail		
	실무자	직위				성명	
전화					휴대폰		

- ☞ 통 계 목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서상 통계목을 기입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 지원근거 : 운영비보조의 경우에만 운영비 지원이 명시된 법령조항을 기재하고, 사업비보조의 경우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지원이 명시된 조항을 기재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 2. .

(직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 임 : 1. 사업계획 요약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현황 등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 요약서

◆ 전체 사업계획을 한장에 요약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등록기관			등 록 일	
	상근직원수 (명)			금년도 총예산 (단위:천원)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 업 비 (단위:천원)	계	지원신청액	자부담	자부담비율(%)
				-	
	사업대상				
	사업효과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산 출 내 력					
최근 공익활동 추진실적	<p style="color: red;">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기재 (신규 보조금 신청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도자료, 사진, 회의록 등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p>				
전년도 보조사업 실 적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자 부 담 천원(%)
	사업효과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총괄)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보조 종류 1) :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체명							
사업명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 지원사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회비(자담)	천원
						기부금 (후원금)	천원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2)	사업비	천원	○ 제작비 : 천원 (%)				
		%	○ 사무관리비 : 천원 (%)				
	단체 운영비	천원	○ 급간식·교통비 : 천원(%)등 주요비목				
		%	○ 인건비 : 천원 (%)				
			○ 공공요금 : 천원 (%)				
			○ 수용비 : 천원 (%)				
			○ 활동비 : 천원 (%)				

1) 지방보조금 과목 6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2)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 사업계획

1. 신청 사업명 :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 보조사업(신규)

2. 사업목적

- 손님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면적 150㎡ 미만 음식점에 옥외가격을 표시
- 옥외가격 공개 분위기 확산, 요금 자율경쟁 유도, 바가지요금 등 불만민원 해소

3. 사업추진방법

- 음식 판매 위주 식당, 면적이 크고 이용자가 많은 식당, 관광지 주변 및 장기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 위주로 200개 이상 음식점(150㎡ 미만) 선발
- 옥외가격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새롭게 표시하는 영업장에 표시 비용 지원 (전품목 표시 또는 5종 이상 표시, 100,000원/지원기준)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아래사항은 예시임)

- 사업추진기간 :
- 장 소 :
- 사업대상 : 음식점 / 선정방법 : 공모, 추천, 신청, 모집 등
- 홍보방법 :

5. 사업의 기대효과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시민과 관광객이 음식점의 메뉴, 가격 등 정보를 쉽게 찾아 접근 이용
- 음식 물가정보 ‘여수 맛’ 앱 서비스 참여 분위기 확산
- 가격 공개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로 지역물가 안정, 바가지요금 근절
- 이용자 편의 증대 및 이용증가, 지역물가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외식업 지부에 대한 기대 심리 및 이미지 향상으로 단체 회원 증가를 통한 위생지도 및 관리의 효율성 증가

6. 사업비 집행계획(예시-1) 3)

(단위:천원)

단 위 사업명	재원	지출 비목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20,500	
음식점 옥외가 격표시 사업	자부담	계		500	
		단순 인건비	안내 도우미	300	□ 2명*50,000원*3일=300천원
		홍보비	홍보 플래카드 제작	200	□ 4장*50,000원=200천원
	보조금	계		20,000	
		물품 제작비	옥외가격 표시		□ 200개*95,500원=19,100천원
		활동비	급·간식비·교통비		□ 7명*9,000원*10회=630천원
		사무 관리비	사무관리비		□ 270,000원*1식=270천원

3)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 기초 작성

<작성요령>

- ① 세부사업명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 ② 지출비목 : 강사료, 홍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주요 예산비목 중에서 선택
 - ③ 지출내역 : 구체적인 지출 내역 기재
 - ④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⑤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 ※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 편성 지양

7. 회원명단(임원/단원 포함)⁴⁾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 별지작성 가능

4)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단체현황

단 체 명						
대표자명	한글 (한자)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사무실 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E-mail 주소			
	홈페이지		FAX			
창립년월일			회 원 수	명		
설립형태	사단법인(), 등록단체()					
상근직원수	명(예:사무처장 0명, 총무 0명, 간사 0명)					
설립목적						
조직(임원) ※ 현회장: 대	직 위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전화번호	임기
	회 장					
	부회장					
	총 무					
	간 사					
재정상태 (단위:만원)	연도별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전년도					
	당해년도					
시군지회 현황	개 소 : , , , , , , 총회원수 : 명(여수시에 한함)					
내년도 사업추진방향 (또는 주요사업)						

※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 총회 회의록 등)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한 “여수시 고시 제2022-492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와 관련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23. 2. 9.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봉계동 811-5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3-137호선)사업
 - 나. 명 칭 : 여수상공회의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 1,105㎡
 - 나. 규 모 : L=80m B=13.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21.11.25.~2022.12.31.
└변경: 2021.11.25.~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합계				14,295	1,105						
1	여천동	396-5	답	89	88	전라남도여수시 좌수영로55(광무동)	여수상공회의소				
2	여천동	393	답	89	89	봉계동 737	삼일중고자동차판매주식회사	근저당권	(주)고려상호신용금고	여수시 충무동 502-1	
								근저당권	(주)주택사업공제조합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	신한국산업개발주식회사	여수시 중앙동 711	
3	여천동	871-15	대	378	3	기획재정부	국				
4	여천동	871-16	도	5,905	66	건설부	국				
5	봉계동	811-5	도	6,001	67	건설부	국				
6	봉계동	741-5	대	47	5	전라남도 여수시 가곡길26-1(선원동)	김치곤				
7	봉계동	741-7	도	225	187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55(광무동)	여수상공회의소				
8	봉계동	742-2	도	228	205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55(광무동)	여수상공회의소				
9	봉계동	744-2	도	600	391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55(광무동)	여수상공회의소				
10	봉계동	726-113	임	12	2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47,302동 604호(웅천동,신영웅천지웰3차아파트)	김상희	지상권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여항단지로 210(봉산동)	
								근저당권	옥과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42	
11	봉계동	726-76	전	717	1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47,302동 604호(웅천동,신영웅천지웰3차아파트)	김상희	지상권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여항단지로 210(봉산동)	
								근저당권	옥과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42	
12	봉계동	726-116	임	4	1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47,302동 604호(웅천동,신영웅천지웰3차아파트)	김상희	지상권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여항단지로 74(봉산동)	
								근저당권	옥과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6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3.

여 수 시 장 (인)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082-50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59 (국동)	20230203	20091013	어항단지를 통과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99, 696-78, 699-4, 699-5, 700-1, 700-11, 882-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531	20230203	20091013	지역 및 위치 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680-3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394-19	20230203	20091013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88-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3길 15-22	20230203	20111114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531		20230203	20091013	지역 및 위치 예측성을 고려	건물철거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67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2896	20230203	20091013	지역 및 위치 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354-5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194	20230203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 화양면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1981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1길 28 (상암동)	20230203	20091013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1078-2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길 98-2	20230203	20091013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955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적금대교로 194-8	20230203	20210630	화양~적금 해 상교량 명칭 활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55-2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사도길 41-5	20230203	20080911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도로구간(중속구간)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중속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3.

여 수 시 장

1. 고 시 일 : 2023년 2월 3일
2. 고시방법 : 시보, 여수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중속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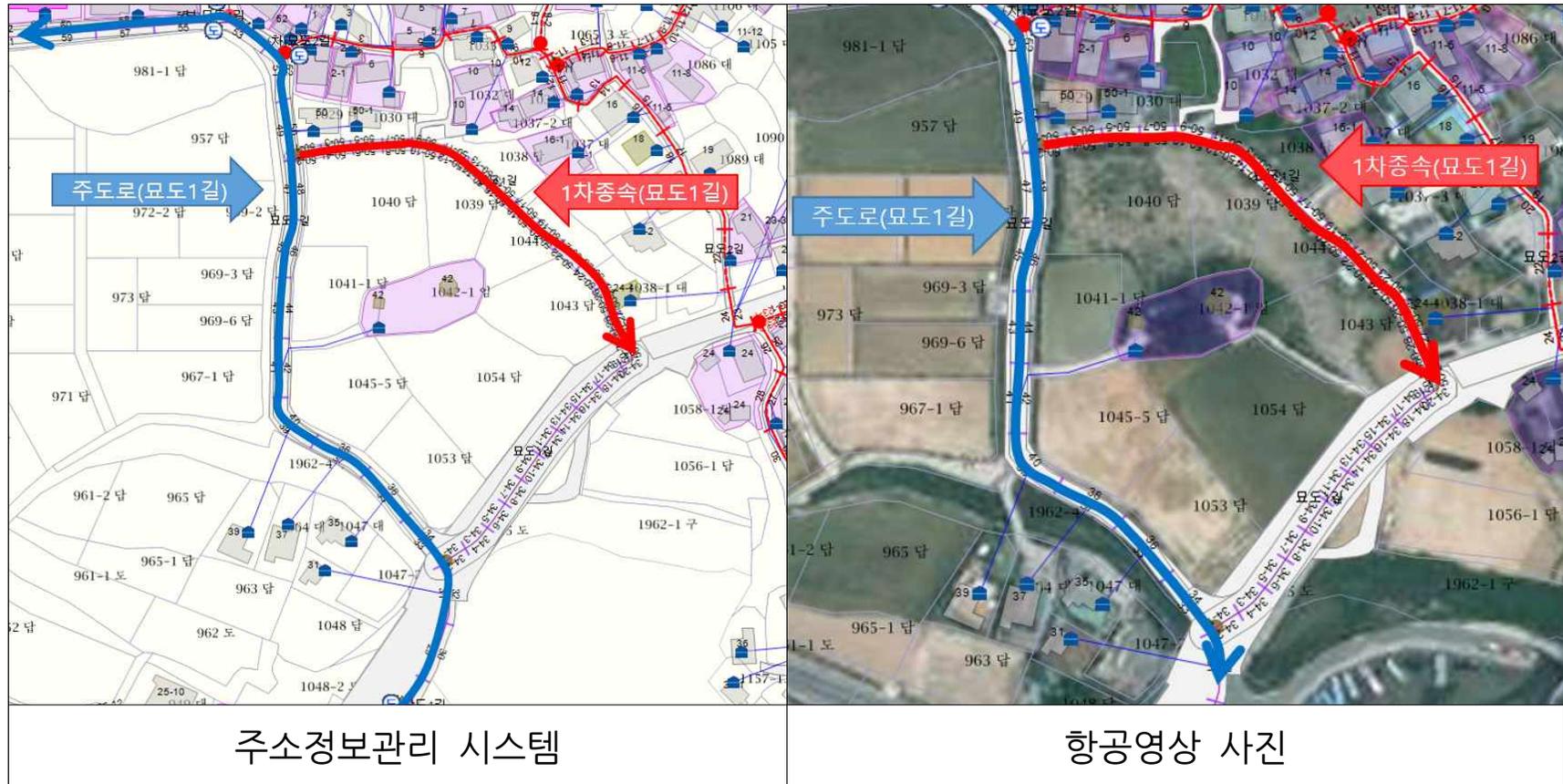
- 묘도1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중속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1부.

도로구간(중속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관할구역	도로명	도로 유형	구분	도로구간		기초번호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효력발생일	설정 사유
				시작지점	끝 지점	기초번호 시작	기초번호 끝					
여수시 묘도동	묘도1길	길	신규	묘도동 981-3	묘도동 1043-1	50-1	50-30	136.06	4.07	10	2023.2.3.	1차 중속구간 신규 설정



「붙임」

도로구간(중속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관할구역	도로명	도로유형	구분	도로구간		기초번호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효력발생일	설정 사유
				시작지점	끝 지점	기초번호 시작	기초번호 끝					
여수시 묘도동	묘도1길	길	신규	묘도동 1055	묘도동 1055	34-1	34-20	95.72	10.19	10	2023.2.3.	1차 중속구간 신규 설정



여수 도시계획시설(대포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대포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포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023. 2. 6.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계획시설(대포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여수 도시계획시설(대포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 붙임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개요

가. 공원구역 결정조서

시설번호	시설의 세분	시설의 명칭	부지면적(m ²)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177	근린공원	대포공원	49,218	47,710	감) 1,508	소라면 대포리 15-2 일원	여수시 고시 제2012-222호

나. 공원이정 및 결정현황

- 공원이정 년 원 일 : 2012. 07. 13. (여수시 고시 제2012-222호)
-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 2015. 04. 22. (여수시 고시 제2015-82호)

다. 법적 검토사항

- 변경 공원이시설률 : 31.6%(법정 40%미만)
- 변경 공원이녹지율 : 68.4%(법정 60%이상)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77	대포공원	도로 및 녹지 면적 일부 제척	- 대로1-3호선 도로 가감차선 확장에 따른 공원 구역계 일부 제척을 통해 원활한 공원 조성 및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도모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기정(m ²)			변경(m ²)			증·감(m ²)		
		부지 면적	시 설 면 적		부지 면적	시 설 면 적		부지 면적	시 설 면 적	
			건축 면적	연면 적		건축 면적	연면 적		건축 면적	연면 적
총 계		49,218.0 (100.0%)	-	-	47,710 (100.0%)	-	-	감) 1,508.0	-	-
공원시설소계(시설율)		15,110.9 (30.7%)	-	-	15,089.9 (31.6%)	-	-	감) 21.0	-	-
■	도로 및 광장	14,181.9 (28.8%)	-	-	14,160.9 (29.7%)	-	-	감) 21.0	-	-
■	휴양 시설	-	-	-	-	-	-	-	-	-
■	편익 관리 시설	929.0 (1.9%)	-	-	929.0 (1.9%)	-	-	-	-	-
■	녹지(녹지율)	34,107.1 (69.3%)	-	-	32,620.1 (68.4%)	-	-	감) -1,487.0	-	-

나. 조성계획(변경) 세부시설 조서

구 분	번호		시설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고	
				위 치	부지 면적 (공작물 수량)	시설면 적		위 치	부지 면적 (공작물 수량)	시설면적		부지 면적 (공작물 수량)	시설면 적		
	기정	변경				건축 면적	연면 적			건축 면적	연면 적		건축 면적		연면 적
총 계				49,218.0	-	-		47,710.0	-	-	-1,508.0	-	-		
도로 및 광장	소 계			14,181.9	-	-		14,160.9	-	-	-21.0	-	-		
	도로		-	13,405.3	-	-		13,384.3	-	-	-21.0	-	-		
	광장		-	776.6	-	-		776.6	-	-	-	-	-		
	1-1	1-1	진입광장A	대포리 1411-34 도	209.1	-	-	대포리 1411-34 도	546.0	-	-	-	-	-	
	1-2	1-2	진입광장B	덕양리 1430철	567.5	-	-	덕양리 1430철	499.0	-	-	-	-	-	
휴양시설	소 계			-	-	-		-	-	-	-	-	-		
	2-1	2-1	파고라	-	(2)	-	-	(2)	-	-	-	-	-		
	2-2	2-2	평의자	-	(6)	-	-	(6)	-	-	-	-	-		
	2-3	2-3	등의자	-	(38)	-	-	(38)	-	-	-	-	-		
편의 및 관리시설	소 계			929.0	-	-		929.0	-	-	-	-	-		
	3-2	3-2	다목적광 장	덕양리 1478철	929.0	-	-	덕양리 1478철	929.0	-	-	-	-	-	
녹지 및 기타	소 계			34,107.1	-	-		32,620.1	-	-	-1,487.0	-	-		
	4-1	4-1	녹지	-	34,107.1	-	-	-	32,620.1	-	-	-1,487.0	-	-	
	4-2	4-2	교량A	대포리 1431철	(1)	-	-	대포리 1431철	(1)	-	-	-	-	-	기타시설 (추후 인가분)
	4-3	4-3	교량B	대포리 1409-5 3천	(1)	-	-	대포리 1409-5 3천	(1)	-	-	-	-	-	기타시설 (추후 인가분)

다. 도로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규모			폭(m)	연장(m)	면적(㎡)	기능	시점	종점	규모			폭(m)	연장(m)	면적(㎡)	기능	시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등급	류별	번호							
합 계				4,465.8	13,405.3				합 계				4,465.8	13,384.3				
중로	2	1	18.0	19.8	576.9	진입로	덕양리 산1-2도	덕양리 1427-6답	중로	2	1	18.0	19.8	555.9	진입로	덕양리 산1-2도	덕양리 1427-6답	면적 감소 (21㎡)
소로	3	2	3.0	789.9	2,369.7	연결로	대포리 1440-4도	교량A	소로	3	2	3.0	789.9	2,369.7	연결로	대포리 1440-4도	교량A	
소로	3	3	2.5	791.7	1,979.2	산책로	대포리 1440-4도	교량A	소로	3	3	2.5	791.7	1,979.2	산책로	대포리 1440-4도	교량A	
소로	3	10	3.0	10.0	42.0	연결로	소로 3-2	대포리 1411-34구	소로	3	10	3.0	10.0	42.0	연결로	소로 3-2	대포리 1411-34구	
소로	3	12	3.0	65.3	196.2	연결로	교량A	교량B	소로	3	12	3.0	65.3	196.2	연결로	교량A	교량B	
소로	3	13	2.5	65.6	163.9	산책로	교량A	교량B	소로	3	13	2.5	65.6	163.9	산책로	교량A	교량B	
소로	3	14	3.0	143.6	430.7	연결로	교량B	중로 2-1	소로	3	14	3.0	143.6	430.7	연결로	교량B	중로 2-1	
소로	3	15	2.5	139.5	348.0	산책로	교량B	중로 2-1	소로	3	15	2.5	139.5	348.0	산책로	교량B	중로 2-1	
소로	3	16	3.0	472.1	1,416.2	연결로	중로 2-1	소로 3-24	소로	3	16	3.0	472.1	1,416.2	연결로	중로 2-1	소로 3-24	
소로	3	17	2.5	467.9	1,169.5	산책로	중로 2-1	소로 3-24	소로	3	17	2.5	467.9	1,169.5	산책로	중로 2-1	소로 3-24	
소로	3	24	7.0	11.0	104.2	진입로	덕양리 산3-13도	덕양리 1405천	소로	3	24	7.0	11.0	104.2	진입로	덕양리 산3-13도	덕양리 1405천	
소로	3	25	3.0	33.2	83.0	연결로	소로 3-26	덕양리 1406-12답	소로	3	25	3.0	33.2	83.0	연결로	소로 3-26	덕양리 1406-12답	
소로	3	26	2.5	155.1	464.2	산책로	소로 3-24	덕양리 1406-12답	소로	3	26	2.5	155.1	464.2	산책로	소로 3-24	덕양리 1406-12답	
소로	3	27	6.5	33.2	226.4	진입로	덕양리 1353-7도	덕양리 1405-20답	소로	3	27	6.5	33.2	226.4	진입로	덕양리 1353-7도	덕양리 1405-20답	
소로	3	28	4.5	67.3	306.1	진입로	덕양리 1353-7도	덕양리 1405-20답	소로	3	28	4.5	67.3	306.1	진입로	덕양리 1353-7도	덕양리 1405-20답	
소로	3	29	3.0	482.6	1,447.8	연결로	소로 3-28	덕양리 1478천	소로	3	29	3.0	482.6	1,447.8	연결로	소로 3-28	덕양리 1478천	
소로	3	30	2.5	471.1	1,177.8	산책로	소로 3-28	덕양리 1478천	소로	3	30	2.5	471.1	1,177.8	산책로	소로 3-28	덕양리 1478천	
소로	3	31	2.5	23.4	58.5	산책로	소로 3-30	소로 3-32	소로	3	31	2.5	23.4	58.5	산책로	소로 3-30	소로 3-32	
소로	3	32	3.0	172.5	539.0	산책로	소로 3-30	덕양리 1478천	소로	3	32	3.0	172.5	539.0	산책로	소로 3-30	덕양리 1478천	
소로	3	33	6.0	51.0	306.0	산책로		소로 3-32	소로	3	33	6.0	51.0	306.0	산책로		소로 3-32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화양 분재 신규마을 조성 사업지구 지적기준점(도근점)신설에 따른 측량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 「붙임 참조」
2. 좌표계 원점명 : 「붙임 참조」
3. 좌표 및 표고 : 「붙임 참조」
4. 경도와 위도 : 「붙임 참조」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 「붙임 참조」
6. 측량성과 보관장소

○ 장 소 : 전라남도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 전 화 : 061) 659 - 3329

여 수 시 장

●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고시 조서

지적기준점 명칭및번호	평면직각 증횡선수치		경위도 좌표		평면직각 증횡선수치		경위도 좌표		소재지	재질	설치 년월일	표고
	X(m)	Y(m)	위도	경도	X(m)	Y(m)	위도	경도				
2515	133588.52	256718.96	34-42-08.26505	127-37-0 3.89787	233896.50	256794.19	34-41-57. 01374	127-37-11 .57295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209	표석	2022. 12. 22	42.25
2516	133618.37	256731.26	34-42-09.23121	127-37-0 4.38847	233926.34	256806.49	34-41-57. 97943	127-37-12 .06336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209	표석	2022. 12. 22	36.63
2517	133671.25	256616.85	34-42-10.96978	127-36-5 9.90656	233979.23	256692.08	34-41-59. 71842	127-37-07 .58115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209	표석	2022. 12. 22	33.95
2518	133646.66	256547.80	34-42-10.18554	127-36-5 7.18777	233954.63	256623.00	34-41-58. 93412	127-37-04 .86096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209	표석	2022. 12. 22	37.83
2519	133685.16	256430.04	34-42-11.45808	127-36-5 2.57071	233993.11	256505.28	34-42-00. 20610	127-37-00 .24517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209	표석	2022. 12. 22	40.92
2520	133724.23	256471.74	34-42-12.71765	127-36-5 4.21825	234032.23	256546.97	34-42-01. 46708	127-37-01 .89248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209	표석	2022. 12. 22	32.95
2521	133701.04	256552.07	34-42-11.94908	127-36-5 7.36844	234008.99	256627.26	34-42-00. 69704	127-37-05 .04158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209	표석	2022. 12. 22	28.04
2522	133741.99	256606.90	34-42-13.26694	127-36-5 9.53239	234049.96	256682.13	34-42-02. 01547	127-37-07 .20696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209	표석	2022. 12. 22	22.34
2523	133725.47	256646.93	34-42-12.72317	127-37-0 1.10117	234033.47	256722.16	34-42-01. 47252	127-37-08 .7759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209	표석	2022. 12. 22	23.71

2524	133684.24	256738.67	34-42-11.36706	127-37-0 4.69536	233992.30	256813.89	34-42-00. 11833	127-37-12 .36997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209	표석	2022. 12. 22	25.79
2525	133714.48	256745.67	34-42-12.34681	127-37-0 4.97779	234022.46	256820.91	34-42-01. 09565	127-37-12 .65297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209	표석	2022. 12. 22	21.61
2526	133740.40	256696.44	34-42-13.19769	127-37-0 3.04992	234048.42	256771.65	34-42-01. 94785	127-37-10 .72392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209	표석	2022. 12. 22	13.53
기준점성과 보관장소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좌표계 원점명				동경좌표계 중부원점, 세계측지계(GRS80)								

여수시 고시 제2023 - 6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 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2-69 (*22. 12. 7.)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어업생산과)	여수시 남면 화태리 산1-36번지 일원	4,900	'23. 2. 6.	참문어 산란서식장 자연석 시설공사
2022-70 (*22. 12. 7.)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어업생산과)	여수시 남면 화태리 344번지 일원	4,900	'23. 2. 6.	참문어 산란서식장 자연석 시설공사

2023. 2. 7.

여 수 시 장

지방하천 점용허가(변경)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여 수 시 장

□ 허가내용

허가번호		다음 허가내역 참조
하천의 명칭		
점용자	주 소	
	성 명	
점용지역	위 치	
	면 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 허가내역

연번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m ²)	점용목적	점용기간	
1	2023-1	중흥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장관	여수시 중흥동 1691번지	9.5	우수 방류관로 매설 및 물방석 설치	2023. 1.18. ~ 2028. 1.18.	
2	2023-2	옹촌천	여수시 시청동3길 29	한국 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옹촌면 조화리 857-1번지 외 4필지	1,084	관로매설에 따른 일시점용	2023. 2. 3. ~ 2023.12.31.	
3	2022-20	옹촌천	여수시 시청동3길 29	한국 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옹촌면 조화리 857-1번지 외 2필지	119	관로매설(추진)	2022. 8. 8. ~ 영구	당초
					옹촌면 조화리 857-1번지 외 4필지	1,104	관로매설(개착)	2023. 2. 3. ~ 영구	변경
4	2003-17	중흥천	여수시 여수산단4로 **	구*우 케미칼(주)	중흥동 904	21.5	공업용수 및 폐수관로	1997. 4. 8. ~ 2023. 3. 30.	당초
					중흥동 904	21.5	공업용수 및 폐수관로	1997. 4. 8. ~ 2028. 3.30.	기간 연장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9.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190번지 외 34필지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묘지공원 69
 - 나. 명 칭 : **ㄱ기정: 여수공설묘지공원 조성공사**
ㄴ변경: 여수시 공설묘지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적 : 595,830㎡
 - 나. 규모 : 묘역 247,052㎡, 녹지 265,021㎡, 공원시설 83,75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 **ㄱ기정: 1997.03.27.~2023.02.28.**
ㄴ변경: 1997.03.27.~2024.02.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게재 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노인장애인과(☎061-659-3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 및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2023년도 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7일

여 수 시 장

1. 책임수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 ※ 지적재조사대행자: (주)연제측량기술원
 2. 2. 사 업 명: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3.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돌산 군내·금성·죽포, 상암지구
4. 사업위치 및 면적
 3. 가. 군내지구: 돌산읍 군내리 132-1번지 일원(1,353필지 / 485,208.9 m²)
 4. 나. 금성지구: 돌산읍 금성리 321번지 일원(863필지 / 385,860.0m²)
 5. 다. 죽포지구: 돌산읍 죽포리 62-5번지 일원(989필지 / 311,524.0m²)
 6. 라. 상암지구: 상암동 456번지 일원(829필지 / 461,797.0m²)

5. 위탁업무

가.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나.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다. 경계설정

라.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마. 경계재설정 및 임시경계점표지 재설치

바.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확정측량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사. 지적재조사지구 내·외 경계 확정

아. 측량성과물 작성 등

6. 측량·조사기간: 2023. 3.~8.

※ 측량기간은 측량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지적
재조사팀(☎061-659-33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 안정 및 시설물의 보호와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용 CCTV 설치와 관련, CCTV 설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여 수 시 장 (인)

1. 행정예고내용 :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CCTV 설치

2. 설치목적

- 가. 국동지구 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시설물 화재 및 파손예방
- 나. 국동지구 주변 각종 사건·사고 예방

3.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2. 2. ~ 2. 23.(21일)

5. 설치내역

가. 설 치 명 :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CCTV 설치

나. 시 행 청 : 여수시청 도시재생과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라. 설치관련 정보(CCTV 신규설치 11개소)

구분	설치예정지	설치대수	운영시기	비 고
CCTV 설치 (한려지구 뉴딜사업)	동문로 92 (회먹는집 앞)	CCIV 2대	2023년 3월 1일 부터 운영	위치도 1
CCTV 설치 (한려지구 뉴딜사업)	공화남1길 7 (주택 앞)	CCIV 2대	2023년 3월 1일 부터 운영	위치도 2
CCTV 설치 (한려지구 뉴딜사업)	공화동 1046 (백팩커스인여수 앞)	CCIV 2대	2023년 3월 1일 부터 운영	위치도 3
CCTV 설치 (한려지구 뉴딜사업)	공화동 741 (이가네 앞)	CCIV 2대	2023년 3월 1일 부터 운영	위치도 5
CCTV 설치 (한려지구 뉴딜사업)	공화남1길 28-1 (우리마트 앞)	CCIV 3대	2023년 3월 1일 부터 운영	위치도 6
CCTV 설치 (한려지구 뉴딜사업)	공화남 5길 7-1	CCIV 2대	2023년 3월 1일 부터 운영	위치도 7
CCTV 설치 (한려지구 뉴딜사업)	수정1길 11 (동아해운 앞)	CCIV 2대	2023년 3월 1일 부터 운영	위치도 8
CCTV 설치 (한려지구 뉴딜사업)	수정3길 5 (주택 앞)	CCIV 2대	2023년 3월 1일 부터 운영	위치도 9
CCTV 설치 (한려지구 뉴딜사업)	공화동 1370 (순복음교회 앞)	CCIV 2대	2023년 3월 1일 부터 운영	위치도 14
CCTV 설치 (한려지구 뉴딜사업)	충민로 275-1 (대호야채 앞)	CCIV 2대	2023년 3월 1일 부터 운영	위치도 15
CCTV 설치 (한려지구 뉴딜사업)	공화북3길 17	CCIV 2대	2023년 3월 1일 부터 운영	위치도 16

마. 설치위치도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기간 내에 여수시청 도시재생과(☎061-659-45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여수시장 (참조 : 도시재생과장)

-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 팩 스: 061) 659-5849(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홈페이지: <http://www.yeosu.go.kr>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서(양식) 1부. 끝.

【붙임 1】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CCTV 설치」 의견서

의견서		
사업명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법용 CCTV 설치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p>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법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2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서명 또는 인)</p> <p>여수시장 귀하</p>		

여수시 문화재 안전경비원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안)

2023년도 여수시 문화재 안전경비원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여 수 시 장

1 공고 및 원서제출

- 가. 공고기간 : 2023. 2. 2.(목) ~ 2. 6.(월) (5일간)
- 나. 제출기간 : 2023. 2. 6.(월) ~ 2. 8.(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
- 다. 제출처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문화유산과(문화유산관리팀)
-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전자우편
 -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메일 : kmy432@korea.kr)

2 채용 및 근무조건

채용부서 (근무처)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 기간 및 조건
문화유산과 (흥국사)	흥국사 대응전 안전경비	1명	2023. 2. 15. ~ 2023. 12. 31. 3인 2교대 (주간 09:00~18:00, 야간 18:00~09:00)

보수	기타
○ 기본급 : 9,620원 × 실 근무시간 (23년도 최저임금 시급) ○ 야간근무수당 등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름

3

직무기술

<p>주요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국사 대응전 안전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목조문화재(흥국사) 재해예방 및 화재발생시 초동 대응 - 문화재 현장 위해요소 제거 및 발견시 신속한 보고 - 문화재 화재대비 안전관리 및 운영·유지관리
<p>필요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시민지향마인드 ○ (직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시설물 관리에 따른 근무능력 및 책임성 있는 자 - 야간근무 가능한 자(18시~익일 09시)
<p>필요 지식 (개인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시설물에 대한 이해 ○ 친절한 시민응대
<p>응시 자격요건</p>	<p>관련분야 : 문화재 시설물 안전경비 및 시설물 관리</p>
	<p>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만 5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접수일 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2호) ○ 채용 부적격자(사회복무중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정신 질환자 등 근무 곤란한 자) - 신체장애에 따라 해당될 수 있음. ○ 소방안전관리 관련 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건축,전기,가스,안전,기계기사 및 기능장 이상), 소방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p>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p>학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p>가 산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4 채용분야 가산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서류, 실기, 면접 각각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 / 장애인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서류, 실기, 면접 각각 적용)	
장애인	과목별 만점의 10% (서류, 실기 각각 적용)	

5 응시제한

- 가.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회피하여 공정한 채용시험을 방해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 응시제한을 받은 자
(해당 응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응시 제한)

6 심사방법 및 일정

-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및 평가표에 따른 서면심사. 단, 응시인원이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
(소수점은 올리며 전부 합격처리)

서류전형 평점표.(10점)					
① 자기소개서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내용	4개 평가 지표 중 어떤 것도 잘 드러나지 않음	4개 평가 지표 중 1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중 2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중 3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모두 명확히 드러남
② 경험 및 경력기술서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내용	5개 평가 지표 중 1개 이하가 명확히 드러남	5개 평가 지표 중 2개가 명확히 드러남	5개 평가 지표 중 3개가 명확히 드러남	5개 평가 지표 중 4개가 명확히 드러남	5개 평가 지표 모두 명확히 드러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2. 9.(목)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모바일 또는 유선)

나. 2차 심사 : 실기시험

- 일 시 : 2023. 2. 10.(금) 14:00 예정
- 장 소 : 여수선소유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체력 검증
- 실기내용
 - 소방설비 운영(소화기, 옥외소화전, 펌프시설운영)
 - 응급처리(대피요령, 심폐소생술)
 - 기초체력측정(30m 왕복달리기)
 - 실시시험 평정표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계		60점	
소화장비 운영	소방장비 운영능력(소화기 등)	30점	평가위원(여수소방서 2명)
응급처리	응급처리(대피요령, 심폐소생술)	20점	평가위원(여수소방서 2명)
기초체력측정	기초체력측정(30m 왕복달리기)	10점	측 정(문화유산과 직원)

다. 3차 심사 : 면접시험

- 일 시 : 2023. 2. 13.(월) 14:00
- 장 소 : 여수시청 문화홀
- 면접시험 평정표

평 가 항 목(5개항목)	점 수	비고
계	30점	
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상(6~5점), 중(4~3점), 하(2~0점)	
나.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6~5점), 중(4~3점), 하(2~0점)	
다. 근무 능력 및 책임성	상(6~5점), 중(4~3점), 하(2~0점)	
라. 긍정적 가치관 및 대인 관계성	상(6~5점), 중(4~3점), 하(2~0점)	
마. 체력조건 및 기타사항	상(6~5점), 중(4~3점), 하(2~0점)	

※ 면접시험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라. 최종합격자 : 2023. 2. 14.(화)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모바일 또는 유선)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실기·면접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자진포기, 근로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 중도 퇴사 할 경우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
자를 합격 처리.(동점 시 면접 평정항목의 「상」의 개수가 많은 경
우 1순위로 결정)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다. 경험 및 경력 기술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바. 시청 내 친인척 확인서 1부(친인척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사. 자격증명서 각 1부(원본 제시,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 컴퓨터 관련 자격증 포함 제출

아.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하고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
락처 기재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 경력(자격) 인정 안함

※ 양식은 우리 시 홈페이지 www.yeosu.go.kr 에서 내려 받아 작성 가능함

8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스스로 기재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 선발을 위해 여수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채용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해당 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수시 비정규직 채용 응시에 제한됩니다.
- 라.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되 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전 기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된 날의 14일 이후부터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 061-659-47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응 시 원 서

채용분야		접수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지원직무		
현 주 소	도로명주소 번호 앞까지만 기재(동호수 등 세부내역은 미기재)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가점항목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해당자만 체크)			
2. 교육사항(1)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교육 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사항(2) *지원자격 요건상 학위 취득이 필수적인 경우				
전공분야	학위 취득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3. 자격사항 *직무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입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력사항 *직무관련 경력사항만 기입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역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지 원 자 :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div> </div>				

응시원서 등 제반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뒷면>

1.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2.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3. '제반서류'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 ① **응시원서** : 접수번호를 제외하고 인적사항은 필수로 기재하되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며 응시자 이름과 (인) 부분에 서명하여 제출
- ② **이력서** : 인적사항 및 해당사항 전부 입력
- ③ **자기소개서**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④ **직무수행계획서(해당분야)**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⑤ **경험 및 경력기술서(해당분야)**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동의 체크 및 본인 서명
- ⑦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 : 친인척 기준을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입

【 붙임서류 】

1.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생년월일 및 현주소만 나온 자료)
 2. 경력증명서 각 1부(경력보유자, 경력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제시, 자격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 붙임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붙임 3】

이 력 서

(1쪽)

<필수>			
성 명	(한글)		
주 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취 득 일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기타실적, 능력 등)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등록번호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 여부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여부는 해당항목에 ‘○’ 로 표시 후 증빙자료 첨부

【붙임 4】

자기소개서

(2쪽)

○ 각 항목에 대하여 600자 이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칸을 별도로 눌러 활용 가능>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본 항목에 따라 기술하고 지원동기, 성격 및 가치관, 업무의 전문성, 앞으로의 다짐 등 자신의 생각 등이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작성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학교명, 출신지, 예전 직장, 부모직업 등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거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갑작스럽게 발생한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활용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3쪽)

3. 과거 업무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이견이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업무에 대해 가장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 및 직무기술서

(4쪽)

○ 작성요령

- 이력서에 기재한 직무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음

1) 소속 조직 /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

2) 주요 활동 내용 및 성과(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을 나누어 작성 기재)

3) 활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행동

4) 본인의 성과(업무 추진)으로 인해 조직에 기여한 내용 및 기여 정도

5) 지원분야 업무 수행 시, 본인의 강점과 기여할 수 있는 측면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여수시
이용 목적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공직자 이해관계 확인 포함)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2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 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

2022. . .

성 명

(서 명)

여수시장 귀하

【붙임 7】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관계 확인서

- 성 명 :
- 응시번호 :
-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현황

* 배우자, 본인의 4촌 이내 친족,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별첨 참조)

연번	친인척 성명	친인척 직급(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1			
2			
3			
해당 없음			

상기 본인은 공정한 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시청 내 친인척현황 조사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으며 해당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수시 비정규직 채용에 응시가 제한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하며 서약합니다.

2022. . .

작성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

【붙임 7-1】

작성 대상 친족 기준

구분		0촌	1촌	2촌	3촌	4촌
본인	친가	부부	○ 부모 ○ 자녀	○ 조부모 ○ 형제 및 그 배우자	○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 형제의 자녀(조카)	○ 백부, 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 외조부모	○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배우자	친가		○ 부모	○ 조부모 ○ 형제 및 그 배우자	○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 형제의 자녀(조카)	○ 백부, 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 외조부모	○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여수시 공고 제2023-413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6.

여 수 시 장 (인)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 1) 교통시설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 2) 공간시설 결정 변경 조서(변경)

■ 공원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60	산들공원	어린이공원 → 문화공원	죽림리 1248 일원	5,238	증)1.4	5,239.4	전고-385호 09.09.25	

■ 공원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0	산들공원	·면적변경: A=5,238m ² → 5,239.4m ² ·기능변경: 어린이공원 → 문화공원	· 죽림1지구 내 어린이도서관 신축을 위 한 공원기능 변경 및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변경

- 3)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 4) 방재시설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3.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도면: 게재 생략
4. 열람장소: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5. 공고기간: 2023. 2. 6. ~ 2023. 2. 20.(15일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과(☎ 61-659-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의 실태조사 등)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업 체 (대표자)	소재지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주)토탈시스템 (정*형)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모래목길 99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2023. 1. 31.
두두건설(주) (김*년)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1길 76-3		
(주)원텍플랜트 (박*연)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1213, 1층		

2. 공고기간 : 2023. 2. 3. ~ 2023. 2. 17.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영덕군청 안전재난건설과를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수령하여 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를 2023. 2.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은 여수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문의바랍니다.

2023. 2. 3.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3-422호

공 고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뭄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가뭄상황 해제시까지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정책을 추진하여 장기 가뭄상황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감면적용 방법” 일부 개정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가뭄기간 물 절약 수용가 수도요금 감면” 조항 신설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6호 “개정 전 5호를 6호로 변경”

3. 입법 예고기간 : 2023. 2. 3. ~ 2. 23.(20일간)

4.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수도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수도행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761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임시별관) 수도행정과
- E-Mail : ksong33@korea.kr
- 전 화 : 061-659-4860
- F A X : 061-659-585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수도급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극심한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한 경우 가뭄해제시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금액은 1개월 후에 정산액으로 반영한다.

가.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이하: 해당 절감액 전액

나.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해당 초과분의 10퍼센트씩 감면(최대 13퍼센트까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감면은 다른 호와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5. (생략)</p> <p>②·③ (생략)</p>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 ----- ----- <u>제4호 및 제5호</u>-----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극심한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한 경우 가뭄해제시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금액은 1개월 후에 정산액으로 반영한다.</u></p> <p>가. <u>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이하: 해당 절감액 전액</u></p> <p>나. <u>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해당 초과분의 10퍼센트씩 감면(최대 13퍼센트까지)</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여수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여 수 시 장

1. 모집기간 : 2023. 2. 6. ~ 2. 21. (15일간)

2. 모집인원 : 5명

- 토목·지질·환경·건축 등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분야

3.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4. 위원회 기능

- 「여수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변경) 사항 심의
- 중점관리대상의 지정·해제(변경포함) 고시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자문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자격요건

-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련된 지질·환경·건설분야의 전문가
-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여수시 소속 공무원
- 당해 분야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
-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그 밖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6.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서면심사 후 적격자 선정
- 선정기준 : 자격증, 경력, 위원회 중복도 등 감안하여 선정
※ 모집인원 초과 접수 시 동일 자격조건 하 접수 우선 순으로 선정

7. 대상자 선정 통보 : 2023. 2월 중(개별통보)

8.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여수시 안전총괄과(☎ 061-659-3249)

- 직접, 우편, 팩스(659-5838), 전자우편(dua012@korea.kr)
- 응모원서 양식은 여수시 페이지(<https://www.yeosu.go.kr/>) 고시·공고에서 “내려받기” 가능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9. 제출서류 : 여수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신청서 (자격증명서류 포함) 및 자필 이력서 각 1부

10.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안전총괄과(☎061-659-3249)로 문의 요망

붙임 1

여수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등록 신청서

1.위원회 및 전문분야	위 원 회	지하안전위원회	세 부	①		사진첨부
	전문분야		전공분야	②		
2.직업군	직업군 : 공무원, 교수, 공기업, 준정부기관, 연구기관, 협회, 기타					
3.성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
4.자택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우편번호	
5.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직장	
	E-mail주소				팩스	
6.직장현황	직장명				담당업무	
	직급(위)				전문분야 근무경력	
	직장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우편번호
7.자격증 보유현황 (상위등급 부터 작성)	취득년월	자격증명		인가 관리기관		
8.학력현황 (최종학력 부터 작성)	학위취득일	학교		학과	학위구분	졸업구분
9.경력현황 (최근경력 부터 작성)	근무기간(시작~종료)		직위	근무처		주요업무경력
10.위원회 활동(최근 부터 작성)	위촉기간(시작~종료)		기관명	위원회 명칭		주요기능
11.주요논문 및 저서	발표년월 (수행기간)	논문 및 서명		출판사 및 게재지(발주처)		논문 주요내용

상기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

<p>[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선정 등의 업무처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직장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자택주소, 직장주소, 직장현황, 직군분류, 비위여부, 징계전력, 자격증, 학력, 전문분야, 경력, 주요저서 및 논문, 타 위원회 활동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선정 및 운영기간(임기만료일 까지) □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위원회 위촉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p>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2023년 2월 일

작성자(본인)

(인)

여수시장 귀하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등록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등록신청은「붙임1」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사진은 증명사진을 스캔해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전문분야는 본인의 전공학과와 세부전공과목, 자격증 보유, 현직의 담당업무 등을 종합하여 후보자 본인이 전문분야를 기재합니다.

1. 위원회 및 전문분야	지하안전위원회	세부전공분야	①	(예)지반
	(예)토질		②	(예)사면

- 2. 직업군은 자격요건을 참조하여 신청자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인지 확인한 후 해당 직업군을 기재합니다.
 - ※ 직업군 : 공무원, 교수, 공기업, 준정부기관, 연구기관, 협회, 기타.
- 3. 3항(성명) ~ 6항(직장현황)은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고, **메일주소는 연락 받을 메일을 기재합니다.**
 - 직 급 : 현재 소속된 기관의 직위 기재
 - 공무원 : 국장(3급), 과장(4급) 등으로 표기
 - 대학 등 :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 연구원 :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으로 책임, 선임, 수석, 연구위원으로 기재
 - 공사.공단.투자기관 : 임원(1급), 부장(2급) 등으로 기재
 - 기업체 등 임 직원 : 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등) 현 소속 기업체 직위 기재
 - 전문분야 근무경력 : 해당 전문분야 전체(타 기관, 업체 포함) 근무년수 기재
- 4. **자격증**은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종목 및 등급을 상위등급부터 기재합니다.
- 5. **학력사항**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 구분은 박사, 석사, 학사로 구분하고 졸업은 졸업, 수료, 재학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고졸자로서 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 고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6. **경력**은 '1(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문분야와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모두 기재합니다.
- 7. **위원회 활동실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실적을 최근부터 모두 기재합니다.
- 8. **주요논문 및 저서**는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주요 저서 및 논문, 특허 또는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제목과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9.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어서) 후 제출해야합니다.**

※ 작성자란에 서명 날인 후 이미지파일(서명 또는 도장)을 한글파일(hwp파일)로 작성(이미지파일을 한글 파일에 편집)하여 제출 바랍니다. * 상기 각“항”에 대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추가 용지를 사용

2023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공고

1. 사업비 및 사업물량

- 사업비/사업량 : 금 1,200백만원 / 사업량 : 12척(예산범위내)

2.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공고기간 : 2023. 2. 6.(월) ~ 2. 20.(월)
- 신청기간 : 2023. 2. 21.(화) ~ 3. 20.(월)
 - 신청마감 일시 : 2023. 3. 20.(월) 18:00까지
- 신청장소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담당 : 김유림 061-659-3920)

3. 사업대상 업종 및 우선순위

- 가. 대상업종 :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들망
- 나. 우선순위 : 선령, 연령, 법령준수정도(위반횟수, 위반정도), 조업 실적(조업일수), 톤수 등의 기준으로 결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 2)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3) 어선원부 1부
- 4) 선체 사진(전, 후, 좌, 우 각 1장)
- 5) 어선 출입항신고 실적증명서 1부.(해양경비안전서의 출입항신고소나 파출소 확인을 받은 자료에 한함, 요구기간:2021. 2. 21. ~ 2023. 2. 20.)

※ 사업신청 개시일 이전 최근 1년간 60일 이상(감척목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연간기준은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6) 면세유 구입실적 1부

(해당 수협장 확인 요함, 요구기간:2022. 2. 21. ~ 2023. 2. 20.)

7) 수협 위판실적 및 기타 판매확인 서류 1부

8)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9)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5. 신청자격 및 조건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1) 어선감척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우리시)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자도 신청가능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1일 2시간 기준)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 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여수시장이 지역실정을 감안 조업실적 산출(경유 2시간, 가솔린 1시간 기준으로 함)
-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 후 여수시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출
 - (1)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4) 어선 소유자와 어업허가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5)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유효한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 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 나) 어선감척 사업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다른 어업

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예외로한다.

- 다) 어선 감척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1년 이상 조업 실적이 없거나 면세유 구입실적이 없는 어업허가와 어선(무조업어선)을 매입한 경우
- 라)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 마)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사) 사업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연안어업의 어선을 소지한 자.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사업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 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5-가-1)~6)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다. 선령

- 사업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직권감척은 제외)이 경과한 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6.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기준

- 가. 사업대상자의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나.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표(안) >

	구분	가중치(a)	구간별 점수 계산(b)	
		'23년		
1	어선의 선령	0.25	35년 이상	100
			30년 이상 ~ 35년 미만	80
			25년 이상 ~ 30년 미만	60
			20년 이상 ~ 25년 미만	40
			15년 이상 ~ 20년 미만	30
			10년 이상 ~ 15년 미만	20
			10년 미만	10
2	연령	0.25	75세 이상	100
			70세 이상	70
			65세 이상	40
			65세 미만	10
3	법령준수정도(위반횟수) -3년 이내 위반횟수 합산 * 취소는 3회 이상 점수 적용 * 경고는 제외	0.15	없음	100
			1회	60
			2회	30
			3회 이상	10
4	법령준수정도(위반정도) -3년 이내 정지처분일수 합산 * 취소는 60일 초과 점수 적용 * 경고는 제외	0.15	없음	100
			20일 이하	80
			20일 초과 ~ 30일 이하	60
			30일 초과 ~ 45일 이하	40
			45일 초과 ~ 60일 이하	20
			60일 초과	0
5	조업실적(조업일수) * 평균 조업일수 적용	0.10	140일 이상	100
			120일 이상	80
			100일 이상	60
			80일 이상	40
			60일 이상	20
6	어선의 규모 (톤수)	0.10	$\frac{(\text{해당어선의 톤수})}{(\text{해당업종의 평균 톤수})} \times 100(\%)$	C
	합계	1.00	최대 합산 점수(가중치×최고 구간 점수)	100

* C는 등급구간별 점수를 따른다. '평균'은 자율감척 신청자의 평균으로 한다.

(1) 어선의 선령·규모(본선 기준), 연령의 기준 시점은 '23.2.21이며, 조업실적(조업일수)은 최근 2년간('21.2.21~'23.2.20) 실적의 평균으로 한다. 법령준수정도 적용 기간은 최근 3년간('20.2.21~'23.2.20)으로 한다.

※ 조업일수는 해경 출입항 신고기록으로 산출

(2) 대상자는 선정기준표에 따라 합산점수로 높은 순으로 산정하되, 합산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①선령 > ②연령 > ③위반횟수 > ④위반정도 > ⑤조업실적(조업일수) > ⑥규모(톤수) 순으로 선정한다.

[등급구간별 점수 계산표] - 톤수

등급 구간 (%)	점수
140 이상	100
120 이상 ~ 140 미만	85
100 이상 ~ 120 미만	70
80 이상 ~ 100 미만	55
60 이상 ~ 80 미만	40
60 미만	25

7. 불이행시 제재조치

가. 어선감척 대상자는 폐업지원금·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사후관리 이행사항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어업인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음.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이 법 또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의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9.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준가격

가. 5톤이하 어선

(단위 : 천원)

업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연안 어업	복합	25,695	31,303	36,855	41,696	51,951
	자망	25,022	31,580	41,563	41,563	59,338
	들망	59,042	59,042	59,042	59,042	91,574

나. 5톤초과 어선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를 곱한 금액 지급

※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급합니다.**

10. 어선감척 절차

①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신청(신청자→ 여수시)

⇒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의거 관련 서류 제출

② 어선감척 잠정사업대상자 선정(여수시장)

⇒ 신청서 접수기간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③ 감척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여수시장→ 신청자)

⇒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 교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④ 감척대상 어선 선체 사실 확인(잠정사업대상자)

⇒ 여수시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의뢰

⇒ 선체 사실 확인 검사 수수료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 후, 사후 정산 지급

- ⑤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평가(잠정사업대상자)
 - ⇒ 여수시에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
 - ⇒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 후, 사후 정산 지급
- ⑥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등 지급(여수시청)
 - ⇒ 최종사업대상자는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폐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규칙 별지 5,6호서식)
 - ⇒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폐업지원금 또는 감정평가액 지급

11. 기타

- 가. 사업 신청자는 신청안내 공고문,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을 하여야 하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사업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나. 선체확인 비용,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집행주체(여수시)가 사업완료 후 정산지급합니다.(사업을 포기할 경우 비용의 100%를 사업자가 부담)
- 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수산경영과(☎ 김유림 659-392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연안어선감척 대상자 신청안내문을 공고합니다.

2023. 2. 6.

여 수 시 장

(서식 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7. 1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7. 1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직권 선정 통지서

어선·어구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지원 내용	1. 어선·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개월분) 등 지원	
어선·어구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3)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7. 11.>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면 허)에 관한 사항	허가(면허)번호		허가(면허)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내용 연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육상디젤,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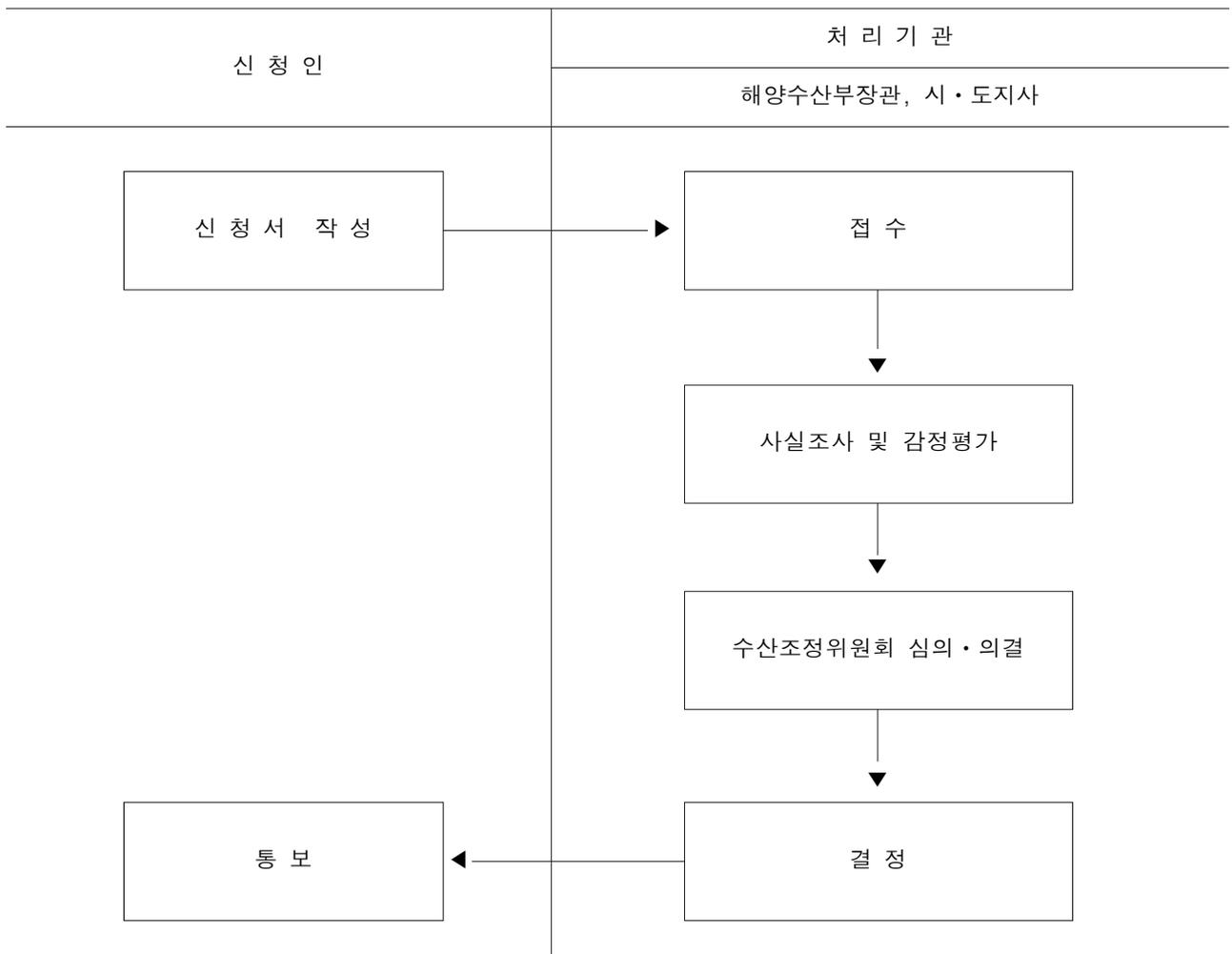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서식 4)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7. 11.>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면허)에 관한 사항	허가(면허)번호		허가(면허)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육상디젤, []디젤		기관의 마력	
그 밖의 사항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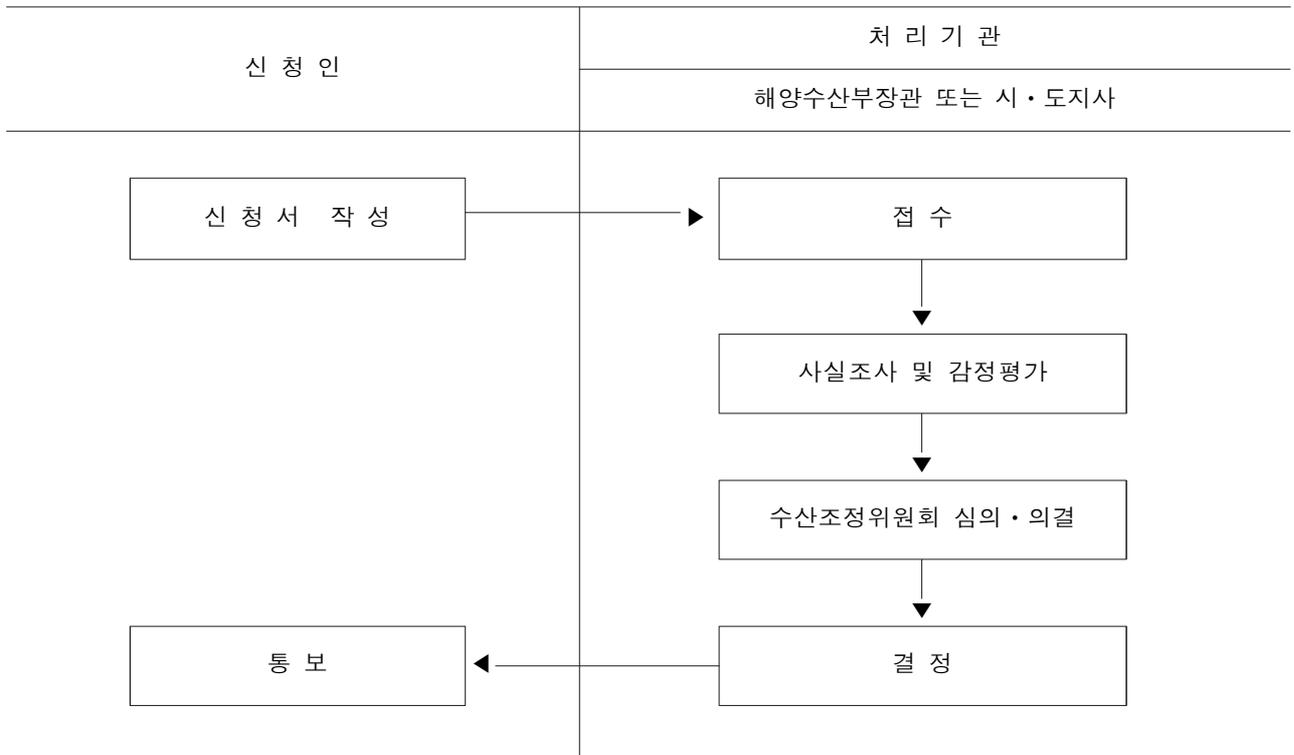
본인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폐업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확인 및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①-1 연근해어선감척(2023년도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김성원	044-200-5510
		사무관 권미연	044-200-5516
		주무관 유해영	044-200-5517
시·도, 시·군·구	수산담당과	지방자치단체 감척 담당자	-

I. 사업개요

1. 목 적

- 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 9조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어구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척당 생산금액 증가율(%)	6.3	4.2	12.1	6.3	-	'23.2월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 및 어선통계(우리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07,778	-	-	-
- 국 비(100%)	107,778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사업자격

< 근해어선 자율감척 >

-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 및 '22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따른 감척 대상 업종 중 희망자
 - 자율감척 대상자 선정 :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감척시행계획의 목표를 초과하여 어업자가 신청한 경우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인하여 조업 구역, 어획량 등 제한여부 ② 수산관계 법령 위반정도 ③ 선령 ④ 어선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

- 다만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에도 자율 감척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자율 감척 선정 기준표에서 어선 제원(선령, 톤수, 마력수 등) 관련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여 선정한다.
- 사업 집행주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감척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2개월 내 조업을 하는 조업 중단 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2개월 내 어업손실액 조사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 조업을 연장 할 수 있다.

< 근해어선 직권감척 >

-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 및 '22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따른 감척 대상 업종 중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0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
 - '22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따라 감척을 신청(희망)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업 대상
 -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 ① 선령 ② 어선톤수 ③ 어선마력수 ④ 법령 위반횟수 ⑤ 법령 위반정도 등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

2.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3~5. 삭제

- 우리부 노후어선 대체건조 등 국고지원 사업* 대상 어선은 자율 감척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 추진하도록 한다.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사업(R&D)

- 어업인은 어선·어구 잔존가액 감정평가 전에 부속선을 감척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에 제외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100% 부담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① 지원대상

< 근해어선 자율감척 >

-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을 지원한다.
-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사업대상자의 폐업지원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

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내용이 부실할 경우,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용역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어선잔존가치 감정평가에 따른 물건 조사시 현장 입회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어업손실액 조사기관 및 감정평가 기관에 대해 감정평가 기간을 각각 1개월 이내로 하도록 한다.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통지할 수 없을 때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사유를 **감정평가 관리기관**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 폐업지원금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사업 집행주체가 폐업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시기·금액·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집행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잔존가치평가액은 개별 어선별로 평가하여 100%로 지원한다.
- **선단 조업 어선 중 본선이 침몰한 어선은 폐업지원금 및 잔여 어선의 잔존가치평가액을 지급(조업실적이 붙임 1.2.가.1)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
-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어선원 1인당 지급금액은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 고시” 중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 최저액”의 최대 6개월분을 지급(다만, 아래 지급 요건을 충족하되 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하되, 지급 대상 인원은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5], 출입항신고기록, 근로계약 관련서류, 선원명부, 어선검사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 지급대상은 감척대상자 선정 통보일 기준으로 감척대상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있고, 선정 통보일까지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선원으로서, 선정 통보일까지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자율감척시 금어기로 선정 통보일 이전에 조업을 중단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어기로 인한 조업 중단일 기준이며, 직권감척 불응하였다 수용한 경우는 직권감척 동의서 제출일 기준임
 -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은 감척어선의 폐업이 확인된 경우 지급신청서의 어선원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되, 개인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선원별 지급동의서를 제출받아 어업자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위 본문 단서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간이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일 때에는 2개월분을,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에는 3개월분을,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때에는 4개월분을,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때에는 5개월분을, 12개월 이상인 때에는 6개월분을 지급한다. 근로기간은 과거 5년간 연근해어선 근로기간을 합산하며 과거 5년간 근로기간 중 타 어선에 승선한 뒤 다시 감척어선에 승선한 경우에는 다시 감척어선에 승선한 기간부터 근로기간으로 인정하며 타 어선에 승선하기 전 기간은 제외한다.
 - * 선정통보일 이후 1달 이내 조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선정 통보일 이후 조업 기간은 위 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음
 - 감척 후 재취업한 어선이 다시 감척되는 경우에는 이전 감척어선의 조업중단 이후에 연근해어선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한다.
 - 어업인 및 어업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확약서[서식 2]를 징구할 수 있다.
-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

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 감척할 경우 잔존가치평가액만 지급한다. 이 경우 당해 업종별 수협은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등선·어획물운반선을 감척한 선단이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향후 감척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을 본선의 어선원부에 기재

-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단체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근해어선 직권감척 >

-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을 지원
- 폐업지원금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소급 기산한 3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가 30일 이상 60일 미만의 경우는 90%,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는 80%, 90일 이상 120일 미만의 경우는 70%, 120일 이상의 경우는 60%를 지원한다.
- 폐업지원금 산정 등은 근해어선 자율감척의 절차에 따라 지원
-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근해어선 자율감척의 지원내용·절차 등에 따라 지원
-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단체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과거 직권감척 부동의자가 동의서를 제출하여 감척지원금 지급시 해당어선이 과거 직권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연도의 지침에 따라 감척 지원금,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법」,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직접수행(국고 100%)

6.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사항

- 어선감척 신청자격·조건, 신청절차·방법,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처리 및 대상자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어선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 [붙임 1]를 참조하여 감척을 추진
- 어선·어구 감척사업 신청안내서(예시)[붙임 2]
-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결과 보고서[붙임 3]
- 어선원 실태조사서[붙임 4]
-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확약서[서식 2]
- 폐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서식 3]
- 보조금 교부조건[서식 4]
-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5]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서식 6]
-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 순기[참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결정(해양수산부) : 2023.12~2023.1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 2023.1~2월
 - * '23년 세부사업계획,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는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감척시행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사업연도 1월)
 -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목표량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감척 안내 공고(사업연도 1월)
 - 어선감척사업 추진 필요성, 목표량 및 추진계획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공고시기 : 사업연도 1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
- 신청절차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공고문에 명기된 제출서류를 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직권감척만 해당)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5. 자금배정단계

지방자치단체

- 시·도지사는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에 대해 검토 후 「보조금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방자치단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어선감척 대상자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준수 여부(사업자 선정·집행 등), 사후 정산 절차 준수 여부 등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시·군·구)에 대해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매년 2회 이상)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지방자치단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기타사항 -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집행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등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4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감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물량에 맞는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예산 신청 포함)하여 제출('23.5월까지)

[붙임 1] 근해어선 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

1. 사업계획

가. 추진절차

- 1)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감척사업 지침 시달 및 감척 사업자 신청 안내공고
- 2) 감척 대상자 선정신청
-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4) 폐업지원금 산출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 5)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나.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 1)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서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대상어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
- 2) 해양수산부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결과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3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도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작성·통보
- 3)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감척대상자의 폐업지원금 **평가 결과**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최종 사업자의 선정을 요청하고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 내역서 조정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신청

다. 사업 집행체계

- 1) 해양수산부는 소요예산 확보, 사업집행지침 수립, 사업대상자 잠정 선정, 예산 및 물량배정 등의 업무를 분담

2)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분담

- (1) 폐업지원금 산출, 어선·어구 등의 확인 및 잔존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

- (1) 사업 안내 등 홍보
- (2) 사업 참가자 서류심사 및 접수
- (3) 최종 사업대상자와 어선·어구의 인도·인수
- (4)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 폐업 신고·취소 처분
- (5)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폐업지원금·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은 어업 폐업신고 사실이 확인(어업허가 유예자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된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

** 매입지원금은 어선·어구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과 어업 폐업신고 사실 확인 후, 해당 어선·어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지급

- 4) 시·도지사는 사업 참가자 서류 심사 및 접수, 감척어선 관리, 폐선처리,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5)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감척어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선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직권감척은 제외)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가) 어선감척사업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해어선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어업허가 유예자 포함)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어업허가)을 소유(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수역 조업 중단일 기준 조업실적 적용 가능

-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및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어업인의 신청자격은 가)요건과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받는 조건 등은 가. 신청자격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업 안전 등을 위해 노후화된 타선단 부속선과 대체하려는 경우는 부속선의 소유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어선대체 계획서 및 조치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관할 어촌계단위 또는 소속 수협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 및 업종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이사, 수협대의원, 수협감사, 업종협회장,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4) 쌍끌이어업에서 1척이 조업실적 산정 기간 중 다른 어선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한 현행 어선의 조업실적과 대체된 종전 어선의 조업실적을 합산하여 조업실적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1척은 사업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 당사자 간 합의한 공증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선박 검사증서 효력 만료 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류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 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최종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최근 3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선을 상속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권감척은 제외)는 사업 참가자격이 없다.

가) 어선감척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 감척, 근해어선감척, 연안어선 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 태풍피해지원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 (2)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3)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을 감척하고,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을 소유한 자
- 나) 어선 감척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없거나 면세유 구입실적이 없는 어업허가와 어선(무조업어선)을 매입한 경우
- 다)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낙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2-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 라)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 마)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감척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선령

-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직권감척은 제외)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어업인 지원 또는 직권감척 시에는 선령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단,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에는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어선감척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안내

- 1)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감척 신청기간, 대상자 선정기준,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어선 감척 절차, 폐업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해어선 감척사업 안내 공고문”을 신청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직권감척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적용)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 시·도에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통보된 공고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 1)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서류

가)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신청서 처리절차

-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기간 중 해당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어업자)에게 통보한다.
- 3) 시·도지사는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본인의 시·도내 감척 우선순위 등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4)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라.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1)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결과 명단을 통보 받은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2)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3) 해양수산부장관은 중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위자의 폐업지원금 신청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통하여 추가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 1)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2)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에 의한다.
- 3) 각 감정평가기관은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의를 필한 평가서를 **감정평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 4) 선박확인 비용, 폐업지원금 산정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감정평가 관리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시기·금액·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감정평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 1)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 2) 해양수산부장관은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2) 중앙(시·도)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

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6.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가. 어선감척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7. 폐업 어선·어구 등 처리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 1) 어선감척 대상자는 **감정평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따라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하며, 감척 어선을 인도할 때까지 선체, 기관 및 의장품 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2)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사업비 지급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3)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감척 대상어선을 인도 받은 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대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전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서의 목록 및 장비 상태를 확인하여 변동 및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인도받아야 한다. 단, 변동,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잔존가치평가액에서 감액하거나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이 때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어선감척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5)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어선·어구 및 장비(유류공급카드 포함)를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수협중앙회, 일선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및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에 통보하고, 일선수협은 해당 어선의 유류공급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

-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감척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3) 감척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시·도지사가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척 대상어선의 연근해어업 외 용도로 매각

- 1)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중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입찰계획을 세워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유선(遊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2)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어선어업 외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라.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

- 1) 폐업어선 중 선령 15년 이하의 저선령 어선을 노후어선 대체에 활용코자 하는 시·도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은 각 시·도의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2) 시·도지사는 폐업어선을 매각할 경우, 동일 시·도에서 대체하고자 하는 동일 업종·톤수 이상의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자(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침몰어선의 어업자는 포함)에게 입찰을 통해 매각하여야 한다.

※ 타 업종이더라도 어선현대화 어선을 매입하여 개조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3) 어선의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이상으로 하되, 공개 입찰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입찰 참가자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대체하고자 하는 어선의 톤수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대체어선의 실제 존재여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 어업허가증·선박국적증서·어선검사증서 사본

※ 최근 1년간 조업실적·선명이 표시된 어선의 전체사진

5) 시·도지사는 입찰 참여자가 종전에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업인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외 하여야 한다.

6)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해당 어선의 어업허가, 어선등록 등을 본인의 소유로 한 후 5년간 매각, 임대 등으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1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7) 시·도지사는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상기 6)의 규정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선박매매계약의 매각조건, 공증각서의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어선원부, 선박국적증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8)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감독을 받아 피대체어선을 어업인의 비용으로 완전해체 처리하고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을 말소 한 후 폐업어선을 대체하여야 한다.

9)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 대상어선은 지원금 집행 후 매각시까지 시·도지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비는 어선의 매각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마. 해체처리 등

1) 시·도지사는 기관, 장비, 비품 등 매각이 가능한 물품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예정가격 대비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매각·해체처리 하여야 한다.

가) 입찰 예정가격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입찰 할 수 있다.

나) 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2) 선체는 선박 해체처리 업체(조선소, 구조물 철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가) 해체처리 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최저 금액으로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위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 장비, 비품 등을 매각한 후 선체에 대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박 해체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할 수 있다.

가) 선박처리업체가 감척어선을 해체 처리 시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 처리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한 해체 처리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 업체가 해체처리한 후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재활용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파쇄·분쇄 후 재활용한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7-마-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해체업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어선 및 어구, 장비를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해체업체는 당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은 매각 또는 활용할 수 있으나 선체는 반드시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 6) 시·도지사는 선박 해체처리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해체처리 단가를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 7) 시·도지사는 폐선처리 등으로 무선국을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전파법」 제25조의2에 따라 무선국 폐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8)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시·도지사의 해체처리 시 협조하여야 한다.

바. 폐업어선의 매각대금의 처리

- 1)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하고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해야할 매각대금을 자체 세입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2)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수산발전기금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금은 감척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8.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 가.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하여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 나. 시·도지사는 감척 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일(사업비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감척대상 어선으로 결정된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해 정부 지원(국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선의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 = A - \{ C - (C \times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매입지원금)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
(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다.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해 감척사업비 지급전에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 1) 어업인이 감척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화재 및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
- 2) 감척 대상어선이 3)이외의 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한다.
- 3)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험(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 지원금의 집행은 어선감척 대상자가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마. 시·도지사는 현장 확인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액은 제외)은 환수하여야 한다.

9.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보조금 실집행이 지연되는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보조금 배정 시 감액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붙임 2] 어선·어구 감척사업 신청안내서(예시)

1. **(목적)**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 어선·어구 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②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4.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붙임 5]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6항의 우선고려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5. **(사업대상자의 우선 고려사항)**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우선 고려사항에 따라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1) 어선의 선령(船齡) 및 어구의 내용연수
 - 2) 어선·어구의 규모(톤수, 마력 등)
 - 3) 조업실적
 - 4)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

6.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①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즉시 구두로 안내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어선별 폐업지원금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수익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②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어선을 확인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 ③ 감척 어선을 확인하는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감정평가 관리기관이 정산 관리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정평가 관리기관이 정한다.
- ④ 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해수부, 시도지사 및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 3)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8.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 주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집행 주체는 **감정평가 관리기관에서** 어선·어구 등의 매입지원금관련 자료 요청시 협조하여야 한다.

-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 주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사업집행 주체는 폐업지원금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9.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면 **[서식 7]** 폐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에 어업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어업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날부터 30일 이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어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감척대상 허가어선 정보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0.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0.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권감척은 제외)

11. **(기타사항)** 어선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3]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사·도	순위	신청업종	선 명	소유자	외국수역 조업허가	선령	보유허가	톤수	소유 년월	출어 일수	선질	신청금액
예시)		(근해자망)			유·무기록			신통수				
경남		(근해통발)	57만선	홍길동	유	10	자망,연승	15	95.02	80	강	

* 무저·조업선(선단조업 중 침몰어선 등) 신청자 내역

사·도	순위	신청업종	선 명	소유자	외국수역 조업허가	선령	보유허가	톤수	소유 년월	출어 일수	선질	비고
예시)		근해자망			유·무기록			신통수				무조업선
경남		대형선망	57만선	홍길동	유	10	자망,연승	15	95.02	80	강	본선 침몰

< 작성방법 >

- 문서형태/글자모양/글자크기/띄어쓰기 : 엑셀, 굴림체, 10 Point 이내, 띄어 쓰기 없음
- 신청 업종에는 1가지의 업종만 기입
 - 2개 업종 이상의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선이라 하더라도 신청업종은 한 업종만 기입
 - ※ 어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반드시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후 접수
 - ※ 신청업종 결정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는 결과 초래됨
- 선명 : “57만선”으로 기입(“제57만선호”는 잘못된 것임)
- 소유자 : 2인 이상 공동 보유한 경우 소유기간 1년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소유기간 및 연령” 적용에 유리한 자 1인만 기입
- 외국수역 조업허가증 보유 : 있고 없음을 “유” 또는 “무”로만 기입
- 선령 : 年이하의 월 단위는 무조건 버림(10년 6월 또는 10년 2월 → 10년) 경합 시 월 단위는 전화 등으로 추가 확인 예정
- 보유허가 : 2 이상인 경우 띄어쓰지 않고 콤마로 이어 씀(예시: 자망·연승·기통)

- 톤수 : 신통수 기준임.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버림. 숫자만 기입(15.83톤 → 15)
 - ※ 구톤수는 신통수로 환산 : 구톤수 × 0.72 = 신통수
- 출어 일수 : 시행기준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기간 중 조업을 위한 출어한 일수
- 소유 년월 : 78.02 또는 03.11(예시는 1978년2월과 2003년11월을 표시한 것임)
- 선질 : 강, 목, FRP 중 1가지만 기입
- “신청업종, 보유허가”는 아래에서 선택하여 약칭으로 기입

법 령 상		감척사업 신청서 기입	
종 류	명 칭	신청업종	보유허가 (약칭)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기저	외끌이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저인망어업	중형기저	동기저
	외끌이서남해구저인망어업		외서기저
	쌍끌이서남해구저인망어업		쌍서기저
근해트롤어업	대형트롤어업	근해트롤	대트
	동해구트롤어업		동트
근해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선망	대형선망
	소형선망어업		소형선망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	채낚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	권현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	자망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	안강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	봉수
	근해자리돔들망어업		자리돔
잠수기어업	잠수기어업	잠수기	잠수기
근해통발어업	장어통발어업	근해통발	장통
	기타통발어업		기통
	문어단지어업		문단
근해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근해형망	패형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	연승

[붙임 4] 어선원 실태조사서

- 조사연도 : 2023(○)
- 조사방법 : 전화(), 면담(), 어업인 직접작성()
- 사업분야 : 연안어선(), 근해어선(○)

가. 선주 주소 및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 생략
주소			

나. 선박제원 및 허가내역

허가번호		허가기간	. . . ~ . . . ()	
어선명	어선번호		어업의 명칭.종류	
건조일자		톤수	허가톤수 : , 표시톤수 :	
선체재질		기관종류	육상디젤(), 디젤()	마력

다. 감척어선 승선 어선원 현황

출항 (조업) 일수	승선 인원	고용보험 가입현황			선원법상 실업수당 지급현황		
		가입 인원	미가입 인원	미가입 사유	지급 인원	미지급 인원	미지급 사유
*연간 조업일수	*조업전 까지 승선인원 또는 평균 승선인원			①외국 어선원()명 ②65세 이상 ()명 ③상시 4명 이하 고용 ④1개월 60시간 미만 근무 () 명 ⑤여력부족 ⑥기타			①계약기간 만료 ②20톤 미만 선박 ③선원근로조건위반, 하선 등 ④선원노동위원회 인정 ⑤여력 부족 ⑥기타

※ 정책 수립에만 참고함(최종계약체결 완료 후 제출)

[서식 1]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어업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_____)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육상디젤, []디젤		기관의 마력	

신청인(생활안정지원금 수급 어선원에 관한 사항) /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승선기간	계좌번호	서명
1							
2							
3							
4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어업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어선원 대표)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3.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 사본 1부 4. 「선원법」 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른 선원명부 1부 5. 생활안정지원금 수급용 금융기관 통장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어업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수급 확약서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수급 확약서

신청인 (어업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육상디젤, []디젤		기관의 마력	

신청인(생활안정지원금 수급 어선원에 관한 사항) /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승선기간	계좌번호	서명
1							
2							
3							
4							
5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액		지급일	
--------------	--	-----	--

○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 확약사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신청인(어업자) 및 어선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 된 경우 이 법 또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수급 확약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어업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어선원 대표)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서식 3] 폐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폐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육상디젤, []디젤		기관의 마력	
폐업지원금액		폐업지원금 지급일		

○ 사후관리 이행사항

-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어업인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음.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이 법 또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의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어업폐업신고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서식 4]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5]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식 6]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 국고보조 비율 : ○○%

○ 사업내용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참고]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 순기

구 분	일 정	집행주체
○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전년도 12월	해양수산부
○ 근해어선 감척사업 안내 공고 - 시행령 제3조 공고내용 포함	전년도 12월	해양수산부, 시·도
○ 근해어선 감척사업 홍보 - 공고내용 홈페이지 게시 등 - 신청자격, 접수기간, 대상자 선정기준 등	전년도 12월	시·도(시·군·구) 수협 등
○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서 접수 - 결격여부 확인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	수시	시·도 (시·군·구)
○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 관할 시·도에 통보, 필요 시 추가접수 안내	수시	해양수산부, 시·도
○ 매입지원금·폐업지원금 등 감정평가 실시 - 평가결과 및 소요예산 내역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수시 (사업자 선정 시)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국고 송금	수시	해양수산부
○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 지급	수시	시·도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4분기	시·도

※ 사업일정은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①-2 연근해어선감척(2023년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김성원 사무관 권미연 주무관 유해영	044-200-5510 044-200-5516 044-200-5517
시·도, 시·군·구	수산담당과	지방자치단체 감척 담당자	-

I. 사업개요

1. 목 적

-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어구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척당 생산금액 증가율(%)	6.3	4.2	12.1	6.3	-	'23.2월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 및 어선통계(우리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1,000	-	-	-
- 국 비(80%)	16,800	-	-	-
- 지방비(20%)	4,200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사업자격

가.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 감척(이하 “어선감척”이라 함) 대상 업종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8개 연안어업 및 제26조에 따른 12개 구획어업 중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결과 및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업종별 단가, 지역별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함

- 우선 고려사항 : 어업의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다른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어업, 외국과의 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 기타 어획강도가 높고 업종 간 분쟁해소 필요 어업,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어업인의 경우 폐업희망 어업 등 시·도지사가 정할 필요가 있는 어업

나. 시·도지사는 “가”에 따른 대상업종을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라 시·도지사가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붙임 1] 2. 신청자격 및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격과 조건을 달리 정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때에는 조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조업실적(60일 미만)이 저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라. 사업 집행주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감척 사업의 연내 집행 완료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2개월 내 조업 중단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우리부 노후어선 대체건조 등 국고지원 사업* 대상 어선은 자율 감척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 추진하도록 한다.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사업(R&D)

- 어업인은 어선·어구 잔존가액 감정평가 전에 부속선을 감척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에 제외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100% 부담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을 지원한다.
- 사업 집행주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5톤 이하 연안어업 어선 및 구획어업(톤수 무관) 어선)의 폐업지원금 및 어선잔존가 산정을 위해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준가격[붙임 1]에 따라 지원하며, 2개 이상의 어업허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증의 주어업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붙임 1]에 주어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 사업 집행주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5톤 초과 연안어업 어선)의 폐업지원금 및 어선잔존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사업 집행주체는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내용이 부실할 경우,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용역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업 집행주체는 어선잔존가치 감정평가에 따른 물건 조사시 현장 입회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폐업지원금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사업 집행주체가 폐업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시기·금액·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집행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잔존가치평가액은 개별 어선별로 평가하여 100%로 지원한다.
-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
-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근해어선 자율감척의 지원내용·절차 등에 따라 지원
-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단체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연안·구획어업의 직권감척은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근해어선 자율감척의 지원내용·절차 등에 따른다.
- 연안·구획어업 직권감척 시 폐업지원금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국비 80%, 지방비 20%)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3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가 30일 이상 60일 미만의 경우는 85%,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는 80%, 90일 이상 120일 미만의 경우는 75%, 120일 이상의 경우는 70%를 지원한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법」,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보조(국고 80%, 지방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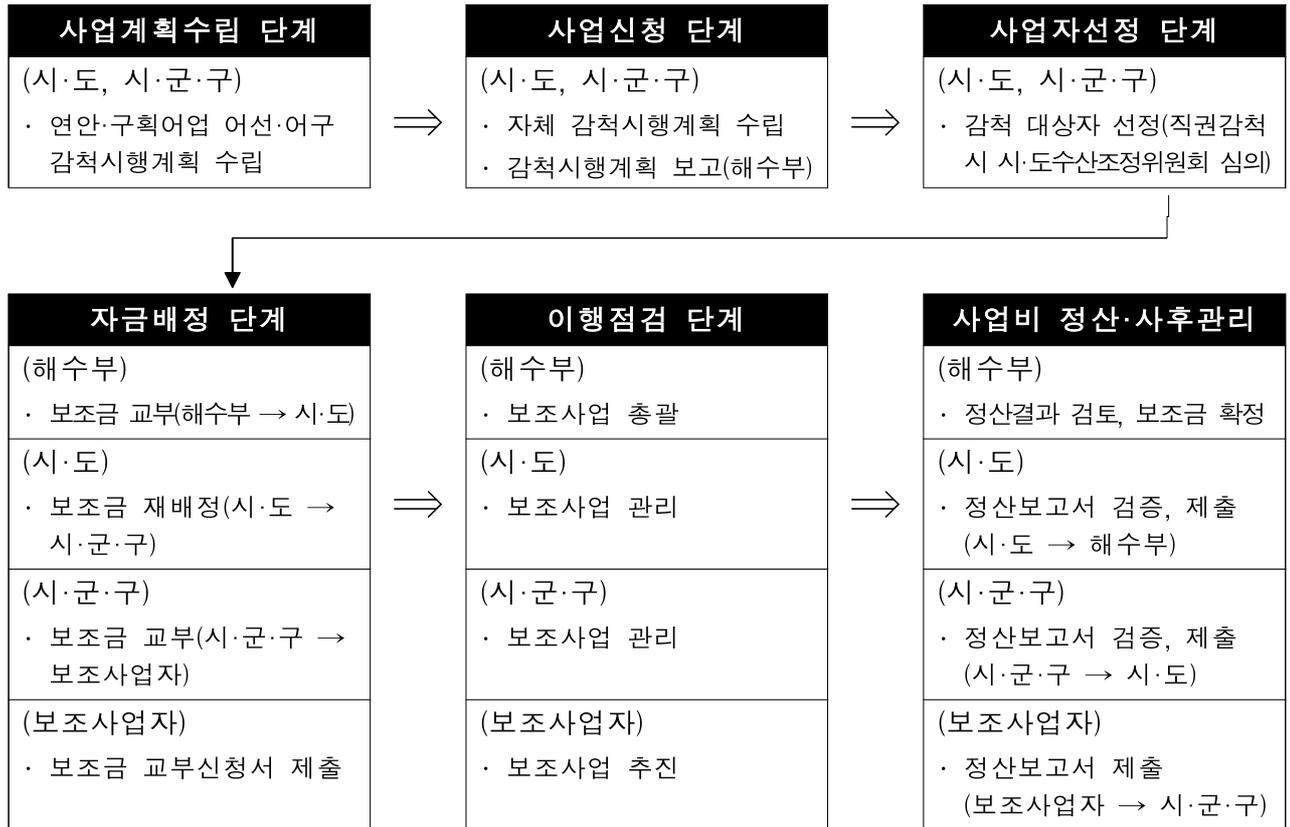
6.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사항

- 어선감척 신청자격·조건, 신청절차·방법,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처리 및 대상자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어선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 [붙임 1]를 참조하여 감척을 추진
-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별 기준가격[붙임 2]
-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예시)[붙임 3]
-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예시)[붙임 4]
- 폐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서식]
-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집행 순기[참고 1]
-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추진 절차[참고 2]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지방자치단체

- 감척시행계획 수립 및 해수부 보고(매년 1월)
 -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목표량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감척 안내 공고(매년 1월)
 - 어선감척사업 추진 필요성, 목표량 및 추진계획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3. 사업신청 단계

지방자치단체(사업자)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절차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공고문에 명기된 제출서류를 제출

4. 사업자선정 단계

지방자치단체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직권감척만 해당)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5. 자금배정 단계

지방자치단체

- 시·도지사는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에 대해 검토 후 「보조금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방자치단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어선감척 대상자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준수 여부(사업자 선정·집행 등), 사후 정산 절차 준수 여부 등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시·군·구)에 대해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매년 2회 이상)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지방자치단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기타사항 -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집행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등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IV.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감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물량에 맞는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예산 신청 포함)하여 제출('23.5월까지)

[붙임 1]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

1. 사업계획

가.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 1) 별도로 시달하는 당해 연도 사업 내역서에 의한다.
- 2)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별로 물량을 재배정 및 조정할 수 있다.
- 3) 시·도지사는 관내에 배정된 물량과 예산범위 내에서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은 사업대상에 따라 수립된 감척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물량과 예산을 할당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진할 수 있다.

다. 사업 집행체계

- 1) 해양수산부는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사업물량·예산배정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확인 등의 업무를 분담
- 2)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협조합장 협조)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
 - (1)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 감척시행계획 및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2) 사업대상 업종 선정
 - (3) 폐업지원금 산출, 어선·어구 감척사업 신청공고
 - (4)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6)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폐업 신고·취소 처분
 - (7)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폐업지원금·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은 어업 폐업신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

** 매입지원금은 어선·어구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과 어업 폐업신고 사실 확인 후, 해당 어선·어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지급

- 3)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 (1), (2)를 제외하고 사업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4) 시·도지사는 감척어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선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직권감척은 제외)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가) 어선감척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어업인의 신청자격은 가)요건과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 받는 조건 등은 가. 신청자격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어선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업 안전 등을 위해 노후화된 타선단 부속선과 대체하려는 경우는 부속선의 소유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어선대체 계

획서 및 조치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대상자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직권감척은 제외)는 어선감척사업 대상자 신청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나)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다) 어선 감척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없거나 면세유 구입실적이 없는 어업허가와 어선(무조업어선)을 매입한 경우

라) 「선박안전법」 (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마)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 본문 사업대상자 1. “가” 및 “나”의 사업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연안어업(시·도에서 별도로 정한다)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사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아) 어선·어구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낙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2-가-1)에서 정한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나. 선정

-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선정이 6년(직권감척은 제외)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어업인 지원, 직권감척 및 구획어업의 관리선은 제외한다.
 - * 단,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에는 선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어선·어구 감척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안내

-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 신청 개시일 15일 이전에 “세부감척시행계획”, “어선감척사업 신청절차안내서” 등으로 어업인들이 감척 참가요령 등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가) 어선·어구 감척 신청기간

나)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다) 감척하려는 어선·어구의 수

라) 어선·어구 감척 절차

마) 폐업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3)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안내문은 어선·어구 감척대상자 신청안내공고문[붙임 2]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 1)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어구 감척 신청서류

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그 밖에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신청서의 처리절차

-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사업집행주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라. 사업자 선정 우선 고려사항

- 사업집행주체는 본문 사업대상자의 “가”, “나”, “다” 등에 따라 지역별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마.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결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에게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2)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3) 사업집행주체는 중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위자의 폐업지원금 신청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가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 1)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와 폐업지원금 산출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2)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에 의한다.
- 3) 각 감정평가기관은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의를 필한 평가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집행주체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 4) 감척 어선을 확인하는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사업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5.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 1)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 2)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1) 사업집행주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2) 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6.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 가. 어선감척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어선감척 대상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7. 폐업 어선·어구 등 처리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 1) 어선감척 대상자는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따라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하며, 감척 어선을 인도할 때까지 선체, 기관 및 의장품 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성구획어업 중 어구의 부설이 돌돛으로 인하여 인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오염물질 제거 후 수산생물 서식기반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등 정치성구획어업의 어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지역별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2)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지급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3) 사업집행주체는 감척 대상어선을 인도받은 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거

나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대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전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사업집행주체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서의 목록 및 장비 상태를 확인하여 변동 및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인도받아야 한다. 단, 변동,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잔존가치평가액에서 감액하거나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이 때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어선감척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5) 사업집행주체는 어선·어구 및 장비(유류공급카드 포함)를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수협중앙회, 일선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및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에 통보하고, 일선수협은 해당 어선의 유류공급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

-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공사업(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실습선, 인공어초, 조형물 등)에 해체대상 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3) 감척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에서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척 대상어선의 연근해어업 외 용도로 매각

- 1)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 중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근해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유선(遊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감척된 어선에 대해서 다시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말함

- 2)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어선어업 외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라. 해체처리 등

- 1) 사업집행주체는 조선소, 구조물철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이하 “선박해체업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감척된 어선을 해체 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선박해체업체와 개별계약에 의해 해체처리 할 수 있다. 다만,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 업체가 해체 처리한 후 소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재활용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파쇄·분쇄 후 재활용 한 증빙서류를 사업집행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어선감척 대상자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수협 및 사업집행주체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 해체 처리한 후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3) 사업집행주체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해체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 4) 선박해체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식 및 절차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어선감척 대상자가 직접 해체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단가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 5) 해체처리대상 어선에 매각이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6)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업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해체업체는 당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은 매각 또는 활용할 수 있으나 선체는 반드시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 7) 6)의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8) 사업집행주체는 해체처리 단가를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 9) 사업집행주체는 폐선처리 등으로 무선국을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전과법」 제25조의2에 따라 무선국 폐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마. 폐업어선의 매각대금의 처리

- 1) 폐업어선의 매각, 해체처리, 공공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활용 가능한 장비는 매각할 수 있다.
 - 가) 사업집행주체가 기관 및 장비품 등을 매각할 경우 아래 감정평가기관의 잔존가치평가액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 (1) 1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 (2) 2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 나) 가)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 2)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하고,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해야할 매각대금을 자체 세입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3)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수산발전기금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8.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가.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하여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감척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상대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E = A - \{ C - (C \times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매입지원금)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
(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다.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해 감척사업비 지급전에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 1) 어업인이 감척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화재 및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
- 2) 감척 대상어선이 3)이외의 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한다.
- 3)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험(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 지원금의 집행은 어선감척 대상자가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마. 사업집행주체는 현장 확인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 집행할 수 있다.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액은 제외)은 환수하여야 한다.

9.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보조금 실집행이 지연되는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보조금 배정 시 감액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다. 시·군·구별 연안어선의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80%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 라.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붙임 2]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별 기준가격

'23년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의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업 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연안 어업	복합	25,695	31,303	36,855	41,696	51,951
	통발	25,554	31,714	41,219	41,219	87,847
	자망	25,022	31,580	41,563	41,563	59,338
	선망	29,414	43,376	56,416	69,436	81,972
	조망	15,324	19,039	45,529	45,529	45,529
	들망	59,042	59,042	59,042	59,042	91,574
	연안개량안강망	51,020	57,770	71,916	78,056	78,056

업 종		기준가격
정치성구획어업	건망어업	건망 50,361
	들망어업	들망 34,856
	승망류어업	각망 33,083
		호망 13,647
	장망류어업	낭장망 68,571

[붙임 3] 어선·어구 감척사업 신청안내서(예시)

1. **(목적)**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 어선·어구 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②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4.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6항의 우선 고려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②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업대상자의 우선 고려사항)** 사업집행주체는 본문 사업대상자의 “가”, “나”, “다” 등에 따라 지역별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6.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②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시·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③ 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사업집행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 3)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7.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8.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면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에 어업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어업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날부터 30일 이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어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감척대상 허가어선 정보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9.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주체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0.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권감척은 제외)

11. **(기타사항)** 어선·어구 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4]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예시)

어선·어구 잔존가치는 아래 표준가격을 참고하되 감척사업 안내 공고 시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표준가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잔존가치는 해당어선의 개별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10년 경과)

- 자망, 복합, 통발, 들망, 안강망, 조망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			FRP			목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자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복합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통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들망	6,634	18,184	75,887	6,220	16,734	72,986	5,405	13,883	67,284
안강망	18,213	30,436	54,099	17,799	28,986	51,198	6,984	26,135	45,496
조망	10,093	19,980	40,296	9,679	18,530	37,395	8,864	15,679	31,693

- 선망

선망(1척) : 5톤			선망(2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47,290	45,218	41,145	87,551	84,264	77,805	55,951	52,664	46,205
선망(3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4.5톤			선망(운반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77,211	73,924	67,465	26,757	24,892	21,226	42,065	38,778	32,319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폐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육상디젤, []디젤		기관의 마력	
폐업지원금액		폐업지원금 지급일		

○ 사후관리 이행사항

-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어업인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음.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이 법 또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의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어업폐업신고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참고 1]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집행 순기

구 분	일 정	집행주체
○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전년12월~'23.1월	해양수산부
○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안내공고 - 시행령 제3조 공고내용 포함	'23.1~2월 (산장간개시일15일전)	시·도 (시·군·구)
○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홍보 - 공고내용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문 발송 - 신청자격, 접수기간, 대상자 선정기준 등	'23.1~2월	시·도(시·군·구) 수협 등
○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신청서 접수	'23.1~2월	시·도 (시·군·구)
○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 목표 미달시 추가접수 안내	2~3월	시·도 (시·군·구)
○ 매입지원금·폐업지원금 등 감정평가 실시	3~4월	시·도 (시·군·구)
○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 지급	4~6월	시·도 (시·군·구)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6~8월	시·도 (시·군·구)

※ 사업일정은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추진 절차(예시)

추진순서	수행기관	소요기간	내 용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해양수산부	즉시	○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해양수산부	즉시	○ 시·도별 감척물량 확정 및 소요예산 배정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시·도	15일 이내	○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사업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신청자격, 제출서류, 사업대상자 결정 방법 등 안내
사업안내 사업홍보	시·도 시·군	15일 이상	○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 ○ 시·군·구에서 관할 수협, 어촌계 등에 신청 안내문 발송 ○ 예산,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기간, 사업대상자 결정 방법 등 안내
신청서 접수	시·군 시·도	7일간	○ 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서류 접수 ○ 신청참가자격 유무 확인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도 시·군	10일	○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매입지원금·폐업 지원금 등 감정평가	시·도 시·군	30일	○ 사업대상자의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등 잔존 가치 (매입지원금) 평가 ○ 권역별로 정해진 감정평가기관에 한해 감정평가 실시
폐업어선 처리 어업허가취소	시·도 시·군	30일	○ 어선·어구, 시설물 등 폐업어선 해체처리 ○ 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지급	시·도 시·군	30일	○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금액을 지급
사업 정산	시·도	30일	○ 사업결과 취합 및 자금 정산후 반납

2023년 여수시 해수욕장 관리계획 의견청취 공고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7.

여 수 시

장

1. 주요내용

- 해수욕장 현황 및 개장계획
-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
- 편의증진을 위한 이용환경 및 시설 조성 계획 등

2.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대상 :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 제출기간 : 2023. 2. 7. ~ 2023. 2. 21.(15일간).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처 : 여수시청 해양정책과 해양레포츠팀
 - 우 편 : 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4층 해양정책과
 - ※ 2023년 2월 21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문의처 : 여수시 해양정책과 해양레포츠팀 ☎(061) 659-3968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2023년 해수욕장 관리계획 1부. 끝.

의견서

① 해당 항목		
②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연락처	
③ 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p>	
<p>해수욕장 운영·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2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 (서명 또는 인)</p> <p>여수시장 귀하</p>		

2023년 여수시 해수욕장 관리계획



여 수 시
(해 양 정 책 과)

목 차

I. 운영 목표 및 방향	1
II. 해수욕장 운영 개요	2
1. 지정해수욕장 현황	2
2. 2022년 개장 현황	2
3. 2023년 해수욕장 개장 계획(안)	3
4. 해수욕장별 편의시설 현황	3
III. 2023년 세부 추진 계획	4
1. “안전사고 zero” 안전관리 강화	4
2. “코로나19 확산 zero” 방역	10
3.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12
IV. 해수욕장 홍보계획	15
1. 2023년 해수욕장 홍보계획	15
V. 관리운영 위탁 및 사용료 징수사항	15
1. 관리운영 위탁 근거	15
2. 시설 관리운영 위탁 현황	15
3. 2023년 위탁 지정 및 사용료 징수계획	16

운영목표 및 방향

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도시 해수욕장 조성	
운영방향	세부추진과제	
<p>“안전사고 zero” 안전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황실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 안전관리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 안전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p>“코로나19 확산 zero” 방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발생 방역 체계 구축 ■ 방역물품 보급 및 방역소독 실시 ■ 방역대책 홍보 및 근무자 위생 수칙 교육 	
<p>깨끗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정비 및 주차장 조성 ■ 수질·토양 등 환경 관리 강화 ■ 근로자 친절 교육 등 실시 ■ 행락질서 확립 및 물가지도 안정 	

II

해수욕장 운영 개요

1 지정 해수욕장 현황

개장 여부	명 칭	소 재 지	길이 (m)	폭 (m)	운영 방식	관리청
개장 (9)	방죽포 해수욕장	여수시 돌산읍	165	45	위탁	여수시
	장등 해수욕장	여수시 화양면	400	20	위탁	
	안도 해수욕장	여수시 남 면	100	40	위탁	
	거문도 해수욕장	여수시 삼산면	135	20	위탁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여수시 만흥동	735	50	위탁	
	모사금 피서지	여수시 오천동	225	30	위탁	
	무술목 피서지	여수시 돌산읍	400	25	위탁	
	웅천 친수공원해변	여수시 시전동	365	20	직영	
	낭도 피서지	여수시 화정면	115	40	위탁	
미개장 (6)	사도 피서지	여수시 화정면	200	25	-	
	서도 피서지	여수시 삼산면	100	20	-	
	손죽 피서지	여수시 삼산면	250	20	-	
	대풍 피서지	여수시 삼산면	200	15	-	
	정강 피서지	여수시 삼산면	100	20	-	
	신덕 피서지	여수시 삼일동	200	25	-	

2 2022년 개장 현황

○ 개 장 지 : 9개소

- 방죽포, 장등, 안도, 거문도, 만성리, 모사금, 무술목, 웅천, 낭도

- 운영기간 : 2022. 7. 9.(토) ~ 8. 21.(일) / 44일간
- 운영시간 : 09:00 ~ 18:00
- 이용객수 : 152,268명 * 전년도 181,138명 대비 감 28,870명(감 16%)

3) 2023년 해수욕장 개장 계획(안)

- 개 장 지 : 9개소
 - 방죽포, 장등, 안도, 거문도, 만성리, 모사금, 무술목, 응천, 낭도
- 운영기간 : 2023. 7. 8.(토) ~ 8. 20.(일) / 44일간
 - * 2023년 해수욕장협의회 개최 시, 기간 확정 예정(5~6월)
- 운영시간 : 09:00 ~ 18:00
- 이용객 유치 목표 : 17만 명 * 2022년 15.2만명 대비 증 12%

《최근 3년간 해수욕장 개장 현황》

연 도	개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용객 수(명)	비 고
2020년	8개소	7. 11.~8. 21.(42일간)	123,112	조기폐장
2021년	9개소	7. 10.~8. 22.(44일간)	181,138	
2022년	9개소	7. 9.~8. 21.(44일간)	152,268	

4 해수욕장별 편의시설 현황

연번	명 칭	화장실	샤워장	야영장	주차장	기타시설
1	방죽포 해수욕장	2	1	1	1	
2	장등 해수욕장	1	1	-	1	
3	안도 해수욕장	1	1	-	-	
4	거문도 해수욕장	1	1	-	-	
5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3	1	-	1	
6	모사금 피서지	3	1	-	1	
7	무슬목 피서지	1	1	-	-	분수대
8	웅천 친수공원해변	2	1	1	1	
9	낭도 피서지	1	1	-	-	
10	사도 피서지	1	1	-	-	
11	서도 피서지	1	1	-	-	
12	손죽 피서지	1	1	-	-	
13	대풍 피서지	1	1	-	-	
14	정강 피서지	1	1	-	-	
15	신덕 피서지	1	1	-	-	



2023년 세부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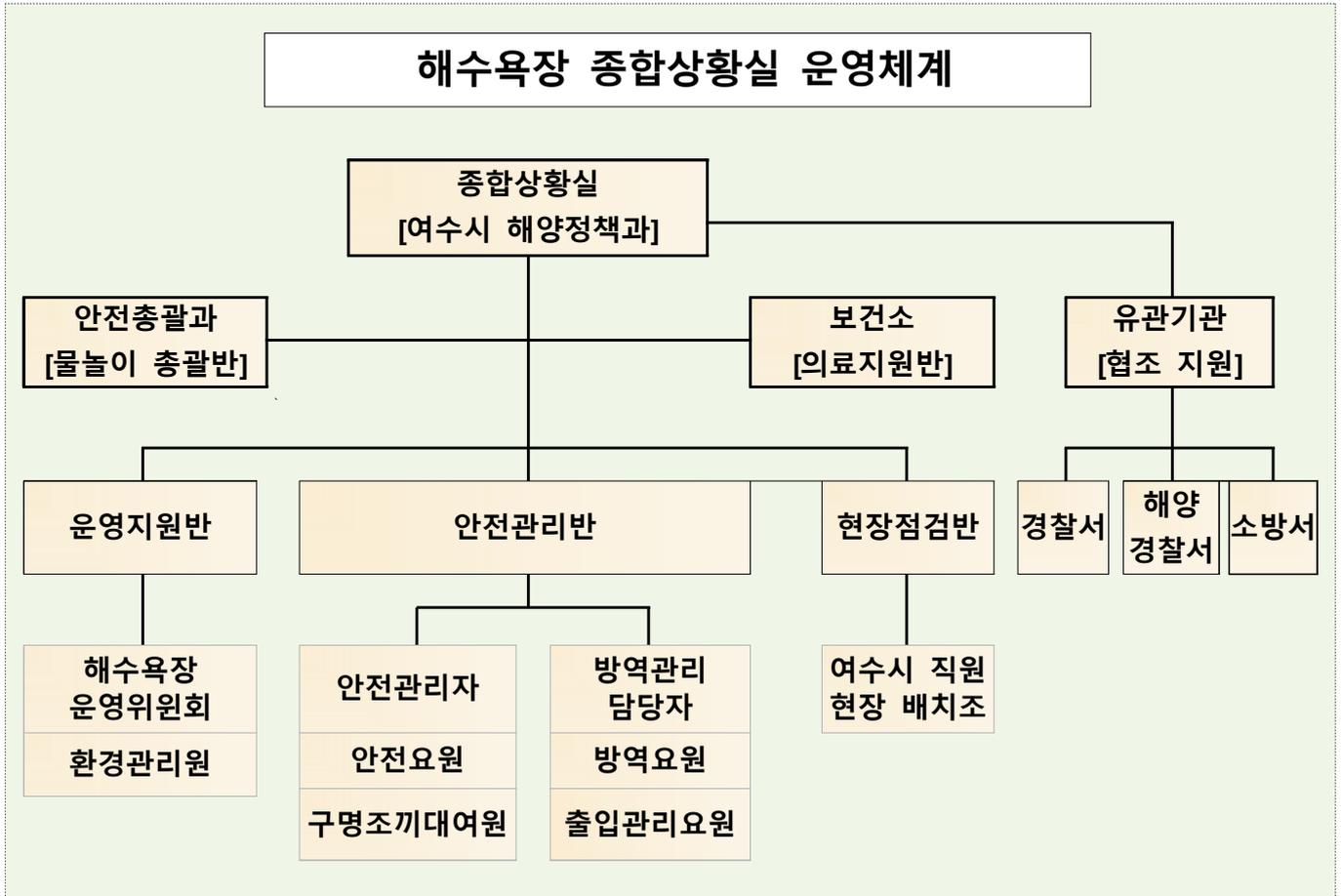
1 “안전사고 zero” 안전관리 강화

1-1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2023. 7. 8. ~ 8. 20.(개장기간)
- 위 치 : 여수시 해양정책과 사무실(국동임시별관, 4층)
- 구 성 : 운영주체 및 유관 기관·단체
- 주요내용
 - 해수욕장 운영 지휘 및 통제, 재해 상황 대응, 응급상황 대처
 - 해수욕장별 안전요원, 공무원 등 인원 배치, 현장점검반 운영

-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방역관리 추진

○ 운영체계(안)



○ 해수욕장 운영주체

- 총괄 : 여수시(해양정책과)
- 운영주체 : 해당 해수욕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마을
- 운영지원 : 유관기관·단체, 관련부서
 - ⇒ 유관기관 : 여수해양경찰서,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주지방기상청, 국립공원관리공단
 - ⇒ 유관단체 : (사)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 해수욕장 현장점검반 운영

- 근거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해수욕장 시설의 안전점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현장 점검반)

- 시 기 : 해수욕장 개장~폐장 시 까지
- 대 상 : 해수욕장 개장지 9개소
- 인 원 : 해수욕장 관할 읍면동 실정에 맞게 편성 운영
- 역 할 : 해수욕장 시설 점검 실시 및 보고
- 점검 대상 및 시기

대상시설	시 기
백사장	개장 1주 전 ~ 종료일까지 매일
편의시설, 판매·대여시설	개장기간동안 2주에 1회 이상
안전시설	개장 2주 전 ~ 종료일까지 주1회 이상
환경시설·행정시설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
체육시설	개장 1주 전 ~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개장 1주 전 ~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문화·체험시설	개장 1주 전 ~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계획 통보

○ 해수욕장 휴일 현장근무반 운영

- 기 간 :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주말·공휴일
- 대 상 : 해수욕장 개장지 9개소
- 인 원 : 13명(수산관광국 4, 읍면동 7, 보건소 2)
- 역 할
 - 1)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관리, 의약품·구조용품 점검
 - 2)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 방역수칙 위반사항 점검
 - 3) 해수욕장 일일 방문객 통계, 해수욕장 금지사항 지도·계도

○ 해수욕장 의료지원반 운영

- 기 간 : 해수욕장 개장기간
- 대 상 : 2개소(만성리 해수욕장, 응천 해수욕장)
- 내 용 : 이동진료소 설치 운영(의료지원 전담인력 2인 배치)

○ 인명사고 통보 체계

- 대 상 :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망, 실종사고
- 상황통보 : 즉시보고(3시간이내) 및 최종보고(24시간 이내)
- 통보체계 : 상황실 → 여수해양경찰서, 여수경찰서

○ 해수욕장 안전관리 행동매뉴얼 수립

- 대 상 : 익수사고, 수상레저기구사고, 백사장 응급환자 등
- 주요내용
 - 1)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순찰 활동 방법
 - 2) 익수자 구조 시 행동 요령 및 AED 등 장비 사용법
 - 3) 이안류 발생 시 대응 방안
 - 4) 수상오토바이 장비 사용법
 - 5) 유해 생물 출몰 안전 관리 방법
 - 6) 해수욕장 안전을 위한 안내방송
 - 7) 사고발생 시 보고 방법 및 비상연락망 등

1-2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근거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안전관리 조치 등)
- 협조체계 내용

유관기관·단체	협조체계 내용	비고
여수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현장배치인력 3인 이상) ◇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신고 접수 및 후송 등 조치 ◇ 주요 해수욕장 순찰근무 지원 ◇ 인명구조장비 점검 및 개장 전 인명구조 요령 교육 	
여수해양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등 구호 활동 ◇ 순찰근무 지원, 안전관리 예방활동 	
여수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치안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활동 ◇ 순찰근무 지원, 안전요원 근무시간 외 긴급 현장 출동 ◇ 해변 주변 음주자 대상 안전 계도 	
광주지방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일일 기상현황 및 기상특보 알림 	
해양구조협회 전남동부지부/ 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구호 활동 ◇ 인명구조 및 안전관리 예방활동 ◇ 해양레저분야 자격취득 등 해수욕장 안전요원 양성 보조 ◇ 해수욕장 안전요원 실무교육 추진(해양구조협회)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시 안전 예방활동 	체험 프로그램 -응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해수욕장 점검 및 안전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협조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 내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방 및 환경 관리 ◇ 국립공원 내 해수욕장 순찰근무 지원 	거문도, 안도

1-3 해수욕장 안전요원 양성 및 전문성 강화

- 근거 :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관리요원)
 - ⇒ 안전요원 : 인명구조 자격,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 시 조종면허 자격을 갖춘 자
- 안전관리요원 양성을 위한 ‘마린스쿨’ 운영
 - 개요 : 수상 인명구조 자격,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자
 격 취득 지원 후 합격자 대상으로 해수욕장 안전
 요원 활용
 - 시기 : 2023. 3. ~ 6.
 - 대상 : 여수시민 250명(만 19세이상)

- 운영단체 :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동부지부
- 지원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생 150명,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 100명 사업비 지원

○ ‘해수욕장 안전요원 실무교육’ 운영

- 개요 : 안전요원 선정 후 해수욕장 별 특성에 따른 행동요령 및 안전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의 실무교육 실시
- 시기 : 2023. 5. ~ 6.
- 대상 : 안전요원 40명
- 운영단체 :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동부지부
- 교육내용 : 수상안전 일반, 구조장비 활용, 안전선 관리 및 운항, 익수자 구조요령 등

○ 안전요원 현장배치 운영

- 기간 : 해수욕장 개장 전일~ 폐장 후일 (7~8월)/ 46일
- 대상 : 해수욕장 개장지 9개소
- 인원 : 안전관리자 2명, 안전요원팀장 9명, 안전요원 29명
- 근무배치 : 개장 해수욕장 전체(9개소, 40명)

계	방죽포	만성리	장등	안도	거문도	무술목	모사금	낭도	웅천
40명	4	10	4	2	2	4	5	3	6

- 안전관리자 임무
 - 1) 안전관리계획 이행 관리, 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 2) 해수욕장 안전시설, 구조장구 확보·운영 및 점검
 - 3) 해수욕장 안전요원 교육·훈련. 배치·운영, 복무관리

-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임무
 - 1)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순찰 활동
 - 2) 인명구조활동· 안전시설의 이상유무 확인
 - 3) 응급환자 응급처치 등

1-4 해수욕장 안전관리 장비 배치

- 추진배경 : 피서지 이용객의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한 기동성 있는구조장비 배치로 안전사고 방지
- 보유현황 : 13대(구명보트 6대, 수상오토바이 7대)
- 배치계획 : 12대 *자체보유 고무보트 6대 중 1대 파손으로 배치 불가

유 형	계	만성리	모사금	웅천	방죽포	장동	안도	거문도	무술목	낭도
계	12	2	2	2	1	1	1	1	1	1
구 명 보 트	5	1	1	1	-	-	1	1	-	-
수상오토바이	7	1	1	1	1	1	-	-	1	1
법 적 기 준	9	1	1	1	1	1	1	1	1	1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5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 ⇒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가 1대 이상일 것

1-5 개인별 안전장비 대여 및 착용 환경 조성

- 개 요 : 입수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구명조끼 및 튜브 무료 대여, 착용 안내방송 등 홍보활동 강화
- 대 상 : 해수욕장 개장지 9개소
- 내 용 : 주요해수욕장 5개소(만성리, 모사금, 방죽포, 무술목, 웅천)의 구명조끼 대여요원 10명 채용 및 착용 권고 안내방송 수시 실시

1-6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

○ 안전관리 경계선 설치 운영

- 설치기간 : 2023. 6. ~ 9.
- 대 상 : 개장 해수욕장 9개소
- 내 용 : 해수욕장 이용객 수영 가능 구역 안전관리 부표 설치 및 경계선 밖 입수금지 지도·계도 실시

○ 해파리 등 유해생물 출현에 따른 사고 방지 조치

- 설치기간 : 2023. 7. ~ 8.
- 대 상 : 개장 해수욕장 9개소
- 내 용
 - 1) 안전요원 주기적 해상 예찰 및 발견 시 수거
 - 2) 출현 상황에 따른 일시 입욕 제한 조치 강화
 - 3) 응천해수욕장 해파리 방지막 1개 설치하여 유입 차단
 - 4) 해파리 쏘임 사고 시 사용 가능한 구급 비상 약품 비치

○ 해수욕장 위험성평가 용역 추진

- 대 상 : 개장 해수욕장 9개소
- 기 간 : 2023. 2. ~ 6.
- 내 용 : 위험지역조사, 안전시설 규모 및 위치 판단, 안전요원 배치 인원 및 위치 판단 등

2 “코로나19 확산 zero” 방역

2-1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 및 매뉴얼 수립

- 운영기간 : 2023. 7. 8. ~ 8. 20.(개장기간)
- 위 치 : 여수시 해양정책과 사무실(국동입시별관, 4층)
- 구 성 : 운영주체 및 유관 기관·단체
- 주요내용 : 대응반 구성 운영 및 유증상자, 확진환자 발생 시 매뉴얼 작성 및 배부

※ 해양수산부 방역 지침에 따른 별도 수립 예정

2-2 해수욕장 방역요원 채용 · 운영

- 운영기간 : 2023. 7. 8. ~ 8. 20.(개장기간)
- 대 상 : 해수욕장 개장지 7개소
- 인 원 : 14명
- 근무배치 : 개장 해수욕장 7개소(14명)

계	웅 천	만성리	모사금	방죽포	무술목	장 등	남 도
14명	4	4	2	1	1	1	1

- 방역요원 임무
 - 1) 편의시설 및 대여용품 방역 소독 실시
 - 2) 방역물품 보급(소독제, 소독기 등)

2-3 해수욕장 거리두기 파라솔 설치 운영

- 추진배경 : 해수욕장 이용객 밀집 제한 운영
- 대 상 : 개장 해수욕장 5개소(웅천, 만성리, 모사금, 장등, 방죽포)
- 내 용

- 웅천해수욕장 거리두기용 파라솔 양끝 간 이격거리 2m 이상 설치 및 무료 현장 배정
 - ※ 파라솔 이설 이용객 방지를 위한 대형 파라솔 구입 설치
- 위탁관리 해수욕장 거리두기 간격에 맞춰 설치하도록 교육

2-4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대여용품 방역 소독

- 추진배경 : 시설 사용 후 신속 소독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 대상시설 : 샤워장, 구명조끼 대여품, 파라솔, 튜브 등
- 내 용 : 사용 후 소독기로 수시 수독 실시, 시설 내 개인소독용품 비치

2-5 개인 방역대책 홍보 및 근무자 교육 실시

- 추진배경 : 해수욕장 이용객 자발적 방역수칙 지키기 홍보 추진
- 내 용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 및 개인 위생 수칙 안내방송 실시
 - 다중이용시설 이용 안내 홍보물 제작, 근무자 일일 발열검사 추진

3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3-1 해수욕장 안내표지판 정비

- 근 거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 대 상 : 개장 해수욕장 9개소
- 주요내용 : 해수욕장 내 금지사항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안내

3-2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추진

- 추진배경 :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환경 활성화에 기여
- 근 거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
- 기 간 : 2023. 4. ~ 11.
- 대 상 : 미 개장 해수욕장 4개소
- 주요내용
 - 해수욕장 일반현황,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 현황 조사
 - 인접토지 및 건물 이용 현황 조사
 - 해수욕장 시설 개선방안 도출 및 활성화 방안 제시

3-3 개장 전 정화활동 추진

- 기 간 : 2023. 7. 1. ~ 개장 전
- 장 소 : 개장 해수욕장 9개소
- 참가대상 : 해양정책과 및 읍·면·동 직원
- 활동내용
 - 백사장 청소 및 시설 점검 추진
 - 지역주민 해양쓰레기 줄이기 홍보

3-4 해수욕장 수질·토양조사 실시

- 근거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수질관리)
- 기간 : 2023. 6. ~ 9.
- 대상 : 개장 해수욕장 9개소
- 조사방법 : 당일 읍·면·동 시료 채취 → 관련 자격 소유 업체 의뢰
- 조사항목
 - 수질조사 : 2종(장구균, 대장균)
 - 토양조사 : 5종(카드뮴, 비소, 수은, 납, 크롬)

3-5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 해수욕장 교통 안전시설 정비 및 주차장 확대
 - 개요 : 주차장 미비로 인한 이용객 불편·시비 해소
 - 시기 : 2022. 6. ~ 2024. 12.
 - 대상 : 무술목 등 해수욕장
 - 주요내용
 - 1) 해수욕장 일원 사유지 주차장 안내표지판 요금 등 설치 권고
 - 2) 지자체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주차장 조성 후 개방 추진
 - 3) 해수욕장별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임시주차장 확보 대책 논의
 - 4) 주변 주차장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로 민원 해소
 - 5) 해수욕장 일방통행 구간 확대 실시 및 표지판 제작 설치 강화
 - ▶ 만성리해수욕장 : 만흥파출소 → 오천동 방향
 - ▶ 모사금해수욕장 : 오천동 생활도로 → 몽돌 해변 방향

○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온수기 설치 등 내부시설 정비 및 야외모래털이기 샤워장 등 신설

3-6 개장기간 근로자 친절도 점검 및 교육 실시

○ 기 간 : 2023. 7. ~ 9.

○ 대 상 : 위탁관리단체·직접고용 근로자

○ 점검방법 : 현장점검반 주 1회 수시 점검

○ 교육내용

- 이용객 응대 요령 안내 및 친절 교육으로 환대문화 조성
- 위생관리 철저 및 호객행위 금지 안내

3-7 개장기간 행락질서 확립 및 계도 활동 실시

○ 물가 지도 단속 실시 및 위생관리 강화

- 인근 상가 요금 과다 인상 및 가격 표시제 지도
- 식품업소 및 계절 음식점 위생 점검 강화 및 청결 유지계도
- 숙박업소 위생, 청결 상태 점검 및 자율 시정 촉구 등

IV

해수욕장 홍보 계획

1) 2023년 해수욕장 홍보 계획

- 해수욕장 방역 수칙 홍보물 제작
 - 예방 수칙 홍보 현수막, 입간판, 포스터 등 제작
 - 출입관리 안내 현수막 등 제작
- 해수욕장 교통안내 표지판 등 제작
 - 일방통행 노선별 방향 표지 안내, 출입금지 구역 표지판 설치
- 시 홈페이지, 각종 SNS,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
 - 개장 기간 및 이용자 수칙 등 홍보 추진

V

해수욕장 관리 운영 위탁 및 사용료 징수사항

1) 관리운영 위탁 근거

- 근거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우선수탁 지정 가능 대상
 - 지역번영화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시설 관리운영 위탁 현황

해수욕장명	협약기간	수탁자	위탁 시설
만성리	'22. 7. 9. ~ '23. 7. 8.(1년간)	만성리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위원장 장성윤)	샤워장, 탈의실, 파라솔 등
모사금	"	모사금피서지운영위원회 (오천어촌계 위원장 김상곤)	샤워장, 탈의실, 파라솔 등
방죽포	"	방죽포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곤)	매점, 샤워장 등
낭도	"	낭도피서지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기)	샤워장, 파라솔 등

3 2023년 위탁 지정 및 사용료 징수 계획

- 수탁자 지정 : 여수시 해수욕장 협회회의 의결로 지정 (매년 5~6월)
- 수탁자 지정 해지 사유
 - 사용요금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목적과 다르게 관리 운영하는 경우, 시장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 사용료 징수
 - 근 거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사용료 :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액 부과

시 설 명	사 용 료		
	텐트	대 20,000원	중 10,000원
샤워장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만7세 이상~만12세 이하)	
주차장	버스 10,000원	승합차 5,000원	승용차 3,000원

※ 조례 개정 등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여수시 금천항 어촌뉴딜300 사무장 채용희망자 모집 공고(안)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천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협의체 등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하며, 지역주민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무장 채용희망자를 모집합니다.

2023. 02. .

여 수 시

1. 모집현황

대 상 사 업	채용기간	채용인원	급여조건	비 고
금천항 어촌뉴딜300사업	1년간 협약체결	1명	월180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포함)	주 5일 (1일/8시간)

2. 희망자 자격요건

○ 채용대상자는 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어촌지역개발관련 분야에 경험과 관련지식을 갖춘 자로서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으며, 다음 요건에 적합한 자.

- 행정능력 등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자
- 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주민과 원만한 관계 유지가 가능한 자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어촌지역개발에 의지가 강한 자

※ 다만, 지원대상마을 및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어업은 겸직 가능

※ 마을 대표의 직계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홈페이지 등 컴퓨터 활용할 수 없는 자는 제외

3. 사무장의 주요담당업무

-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협의체 관련 업무전담 수행
 - 법인결성관련 등 지역 공동 추진업무
 - 회의 개최 및 운영, 각종 회의록 작성 등 업무 전반
-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 추진관련 주민자부담, 운영관리방안 업무
- 지역 고유 브랜드개발, 홍보, 마케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등 주민들이 추진해야할 지역역량강화(S/W) 관련 업무
-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협의체, 자문단, 지원단 등 관련전문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 협의체 등 분야별 조직화 및 운영지원
 - 협의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소그룹단위로 조직화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지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
 - 운용에 따른 회계, 문서 등 권역 사무관리 추진

※ 사무장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와 사무장과 협의하여 정함

4. 제출서류

- 사무장 채용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채용희망마을 현지방문을 실시한 후, 공모신청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자격증, 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
 -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

5. 채용대상자의 선정

- 여수시 및 협의체 협의를 거친 선발절차에 의거하여 사무장 채용이 적합한 자를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 협의체와 사무장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6. 채용일정

- 공고기간 : 2023. 2. 7.(화) ~ 2023. 2. 21.(화)(15일간)
- (1차) 채용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23. 2. 13. ~ 2023. 2. 21 까지

- 접수처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여수·광양지사 농어촌사업부
- (2차) 면접: 2023. 2. 27.(월) 14:00 여수시 국동임시별관청사 2층 회의실
(면접일정 및 장소는 날씨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여수시 금천항 어촌뉴딜사업 담당 박성환 (TEL.061.740-1174)

<별첨1>

사진 (3.0*4.0cm)	이 력 서			
	성	한글		주민등록번호
	명	한문		-
	연락처		E-mail	
현 주소				
학 력 사 항				
기간	학교명(고교이상)	전 공	수 료	졸 업
~				
~				
~				
경 력 사 항				
기간	근무처(부 서)	직 위	업무내용	비 고
~				
~				
~				
~				
~				
자 격 에 관 한 사 항				
취 득 년 월 일	자격·면허증	시 행 처	비 고	
주민위원장 또는 소득법인 대표의 직계비속 해당 여부		○ , X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 작성요령

-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 ② 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부터 기재
(예시 : ○○학교 ○○대학 ○○과(전공) ○○년도 졸업)
- ③ 채용희망권역 : 희망권역의 권역명을 기재
-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⑤ 직무수행계획(요약)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첨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⑥ 주요경력 :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년, 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

- ⑦ 기타 특이사항 : 지원하는 권역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첨3>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어촌뉴딜300사업 담당 사무장 채용 및 관리)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여수시
이용 목적	어촌뉴딜300사업 담당 사무장 채용 및 관리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2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

2023. . .

성 명

(서 명)

여수시장 귀하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 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안디자인ENG (안용호)	전남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238-19	실내건축공사업 (여수2021-01-01_	710417-1*****	2023.2.6.	사업포기

2. 공고 기간: 2023. 2. 6. ~ 2023. 2. 20.(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